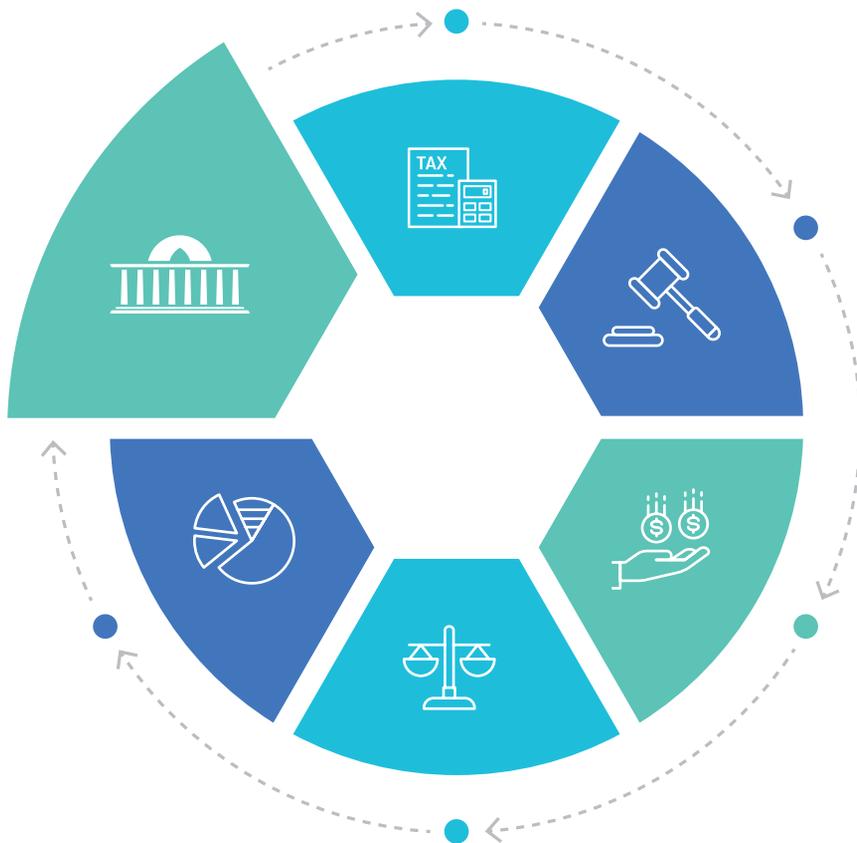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총괄 |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최미희 조세분석심의관
심혜정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임재금 추계세제총괄과장
이유미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윤상열 행정비용추계과장

작성 | 심혜정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김태민, 김호경, 이선화, 박지원,
신우리, 최천규, 박정환, 이정훈,
조무상, 태정림, 장희란

지원·편집 | 조혜정
주남균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02) 6788-4744 | income411@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2020. 12.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사위원회의 심의(2020. 12. 1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국회 세법 심사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한 달여간의 숨 가쁜 여정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33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성안된 20건의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과 9일의 양일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21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고는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논의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익 상

일러두기

1. '소득세'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개정 항목임
 2. '법인세'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개정 항목임
 3.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개정 항목임
 4. '재산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재산과세 분야 개정 항목임
 5. '기타'는 관세법과 국제조세 분야 개정 항목임
 6.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의원안'으로, 개별 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
 7. 본 보고서의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0년도) 대비 증감한 누적세수를 합산한 방식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금액임
 8. 본 보고서의 '현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하며, '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함
-

차 례

I. 개 관 / 15

1. 2020년 정기회 조세분야 법률 심사현황	17
2. 「2020년 세법개정안」 처리과정	20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22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27
5. 주요 심사 쟁점	30
6. 의원발의안 반영 및 정부제출안 수정에 따른 세법개정안 처리	36
7. 향후 논의 과제	38

II.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 41

1. 국세기본법	43
가. 총 괄	
나. 주요 논의 사항	
2.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50
가. 총 괄	
나. 주요 논의 사항	
3.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66
가. 총 괄	
나. 주요 논의 사항	
4. 소비과세(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등)	87
가. 총 괄	
나. 주요 논의 사항	

차 례

5. 재산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재산과세 분야)	98
가. 총 괄	
나. 주요 논의 사항	
6. 기타(관세법, 국제조세)	109
가. 총 괄	
나. 주요 논의 사항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115

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반영된 사항	117
가. 국세기본법	
나. 소득세법	
다. 법인세법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마. 종합부동산세법	
바. 주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사. 국세징수법	
아. 관세사법	
자. 관세법	
차. 조세특례제한법	

2.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사항	125
가. 소득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나. 법인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다.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라. 개별소비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마. 조세특례제한법 중 주요 수정내용	
3. 2020년 제21대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 현황	131

IV. 향후 논의 과제 / 135

1. 부대의견 채택 안건	137
2. 미반영 쟁점 안건	141
3. 기타 추후 논의 과제	154

부 록. - 확정된 2021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 157

1. 2021년 총수입	159
2. 정부안 대비 변동 내용	160
가. 총수입	
나. 국세수입	
다. 세외수입	
라. 기금수입	

표 차례

[표 1] 2020년 정기회 조세분야 법률 심사현황	17
[표 2]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처리현황(기재위 소관)	21
[표 3] 금융세제 개편 주요내용	23
[표 4]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요내용	24
[표 5]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25
[표 6]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개정내용	25
[표 7] 신탁세제 개편 주요내용	26
[표 8]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1~2025년	27
[표 9]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추계	28
[표 10]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사항의 세수효과 변동내역	29
[표 1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개정내용	30
[표 12]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연혁	30
[표 1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31
[표 14]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31
[표 15]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확대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33
[표 16] 기업상속공제 완화 관련 세법개정안	34
[표 17] 기업상속공제 완화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35
[표 18]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36
[표 19]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37
[표 20] 2020년 제21대 국회 세법개정안 처리 현황	37
[표 2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등의 개정내용	45
[표 22] 가산세 감면조정의 개정내용	46
[표 23] 2019년 세법개정시 가산세 정비현황	46
[표 24] 조세정책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범위 개정현황	48

[표 25]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48
[표 26]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개정내용	51
[표 27]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내용	52
[표 28]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연혁	53
[표 2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54
[표 30]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55
[표 31] 개정안 및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57
[표 3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정안 및 개정내용 ..	58
[표 33] 소득세 개정 내용	60
[표 34] 주요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개정 연혁(일반/중견/중소)	68
[표 35]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69
[표 36]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69
[표 37]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개정내용	71
[표 38]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안 및 개정내용 비교	71
[표 39]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개정안 및 개정내용	72
[표 40]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특례 개정내용	75
[표 4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77
[표 4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정내용	79
[표 43] 법인세 개정 내용	82
[표 44]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안 및 개정내용 비교	88
[표 45]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안 및 개정내용 비교	90
[표 46]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확대	91
[표 47]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체계	92
[표 48] 소비과세 분야 개정 내용	93
[표 49]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관련 개정내용	100

표 차례

[표 5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 면제 한도	101
[표 51] 최근 개정 연혁	102
[표 52] 증권거래세율 개정내용	103
[표 53] 재산과세 개정 내용	104
[표 54] 기타 국세 개정 내용	110
[표 55]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대안반영	122
[표 56]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 내용	128
[표 57]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회부현황	131
[표 58]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법률안 상정현황	132
[표 59] 국회 세법개정안 처리내용, 가결방법별 정리	132
[표 60] 부대의견 채택 안건	139
[표 61] 미반영 쟁점 안건	141
[표 62]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조정안	142
[표 63]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144
[표 64]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안	145
[표 65] 법인세율 인하 개정안	146
[표 66] 법인세율 개정 연혁	146
[표 67] 법인세율 개정의 세수효과	146
[표 68] 기업상속공제 완화 개정안	148
[표 69]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요건 연혁	148
[표 70] 기업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연혁	149
[표 71]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연혁	149
[표 72]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개정안	150
[표 73] 상속세 및 증여세율 연혁	150
[표 7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안	151

[표 75]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상향 개정안	152
[표 76] 확정된 2021년 총수입 예산	159
[표 77] 2021년 총수입 변동 내용	160
[표 78] 2021년 국세수입 변동 내용	161
[표 79] 2021년 세외수입 변동 내용	162
[표 80] 2021년 기금수입 변동 내용	162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개 관

1 2020년 정기회 조세분야 법률 심사현황

- 2020년 정기회에서 심사한 조세분야 법률안은 국세 18개, 지방세 4개로 총 22개(제정법안 1개 포함)
 - (국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세무사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대상 안건은 정부안 16건, 의원안 212건¹⁾ 등 총 228건
 - 「조세특례제한법」 104건, 「소득세법」 21건, 「법인세법」 11건 등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심사대상 지방세법 안건은 정부안 4건, 의원안 105건 등 총 109건

[표 1] 2020년 정기회 조세분야 법률 심사현황

법률명	주요 현황
「국세기본법」 (13건)	(가산세 감면제도 조정) 정부안, 기동민·박홍근·김경협 의원안 (국세행정 절차 개선) 김수흥·양경숙 의원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등) 김정호·정청래·김수흥 의원안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등) 정부안
「소득세법」 (21건)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및 금융투자상품 세제 개편) 정부안, 이상직·유동수·류성걸·추경호·이광재 의원안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 정부안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구분 명확화) 정부안, 추경호 의원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부안, 김주영 의원안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정부안, 양경숙 의원안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양경숙·박홍근·강병원 의원안 (표준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우원식 의원안 (근로소득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조경태·김경협 의원안

1) 이하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 전체는 “의원안”, 개별 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

법률명	주요 현황
「법인세법」 (11건)	(신탁세제 개편) 정부안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정부안 (법인세율 인하) 류성걸·송언석·구자근·추경호 의원안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축소) 김수흥 의원안
「조세특례제한법」 (104건)	- 소득세 관련 (근로·자녀장려세제 정비) 정부안, 박홍근 의원안 (ISA 과세특례 개편) 정부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윤준병·문진석 의원안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이명수·전용기·추경호·윤후덕 의원안 - 법인세 관련 (통합 투자세액공제 신설) 정부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정부안, 전봉민·한무경·전주혜·김경만·양경숙 의원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 상향) 정부안, 이주환·이명수·김도읍·김경만·이달곤·양향자 의원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정부안 (유통기업 지원확대) 정부안, 구자근·엄태영·윤두현·김용판·정일영·정성호·박광온 의원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건)	(기업상속공제 적용범위 확대) 홍석준·이영·김용판·권성동 의원안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정부안 (상속세·증여세 세율 인하) 권성동 의원안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 정부안
「종합부동산세법」 (14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상향) 배현진·태영호·박성중·유경준·윤희숙·추경호 의원안 (1세대 1주택자, 실거주주택 비과세) 태영호·박성중 의원안 (세율 조정) 김진애·박홍근·윤희숙 의원안 (장기보유 공제 강화) 배현진·태영호·박성중·김진애·박홍근·추경호·심상정·정일영 의원안
「부가가치세법」 (24건)	(간이과세 적용 기준조정) 정부안, 김철민·이상직·이주환·김경만·송기현·박원수·전재수·윤영석·민홍철·위성곤·이해식·이용호·이만희·박홍근·문진석·서영교·김태호·권명호·박범계·정희용·김정재 의원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확대) 임이자·서영석·도종환·김교흥 의원안
「개별소비세법」 (3건)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조건부 면세) 추경호 의원안 (원료용 중유 비과세) 고용진 의원안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 정부안
「주세법」 (3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건)	(주류 면허발급 제한사유 완화) 김수흥 의원안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세 비과세 등) 정부 (주류행정 사항을 분법) 고용진 의원안

법률명	주요 현황
「증권거래세법」 (2건)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정부, 유동수 의원안
「농어촌특별세법」 (1건)	(투자형 ISA 계좌 이자·배당·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이광재 의원안
기타 세법 (20건)	「관세법」(7건), 「기타 절차법」 등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세무사법」 13건)
지방세 분야 (109건)	「지방세기본법」(11건), 「지방세징수법」(4건), 「지방세법」(34건), 「지방세특례제한법」(60건)

2 「2020년 세법개정안」 처리과정

- 2020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제분야 법률안을 집중심사
 - (2020.11.6.) 세제분야 법률안 293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 (2020.11.10.~11.30.) 조세소위에서 10차에 걸쳐 세법개정안 심사
 - (2020.11.30.) 세법 제·개정안 16건 의결(위원회안(대안)11건, 원안 2건, 수정안 3건)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법개정안 중 17건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
 - (2020.1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세법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
 - (2020.11.3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세법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추가 지정
 - (2020.11.30.) 「국회법」 제85조의3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0건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로 지정 간주²⁾
 - (2020.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세입부수법률안이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법안 중 정무위원회 소관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심사기간(~11.30)내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20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 2020년 12월 2일과 9일 본회의에서 국세분야 법률안 16건이 세입부수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의결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5건은 2020년 12월 2일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0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
- 지방세 분야 법률안 4건은 12월 9일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
 - 지방세 분야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2차례(2020.12.3., 2020.12.7.)심사 후 12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건의 위원회안(대안)이 의결되었고,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

2)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제분야 법률안 중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10건의 대안이 입안되어 대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 간주

[표 2]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처리현황(기재위 소관)

연번	법률명 (15건)	의안 (17건)	주요 내용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처리결과
1	「국세기본법」	정부안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등	대안 반영 폐기	위원회대안 (의원안 5건 + 정부안반영) 원안가결
2	「소득세법」	정부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 및 금융투자상품 세제 개편 등	대안 반영 폐기	위원회대안 (의원안 8건 + 정부안반영) 원안가결
3	「법인세법」	정부안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등 (10년→15년)	대안 반영 폐기	위원회대안 (의원안 4건 + 정부안반영) 원안가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안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등	대안 반영 폐기	위원회대안 (의원안 1건 + 정부안반영) 원안가결
5	「종합부동산세법」	정부안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등	대안 반영 폐기	위원회대안 (의원안 3건 + 정부안반영) 원안가결
6	「부가가치세법」	정부안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8,000만원)·납부면제자(연 매출 3,000만원→4,800만원) 기준 상향	대안 반영 폐기	위원회대안 (의원안 20건 + 정부안반영) 원안가결
7	「개별소비세법」	정부안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확대	수정 가결	위원회 수정안 가결
8	「주세법」	고용진 의원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분법에 따른 조문 재정비	수정 가결	위원회 수정안 가결
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고용진 의원안 정부안	주류 행정에 관한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법	대안 반영 폐기	위원회대안 (의원안 2건 + 정부안반영) 원안가결
10	「증권거래세법」	정부안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원안 가결	원안가결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부안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 확대 및 중재제도의 세법상 근거 규정 마련 등	수정 가결	위원회 수정안 가결
12	「국세징수법」	정부안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	대안 반영 폐기	위원회대안 (의원안 1건 + 정부안반영) 원안가결
1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안	보조금 과세자료의 범위 명확화	원안 가결	원안가결
14	「관세법」	정부안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제한 근거 마련	대안 반영 폐기	위원회대안 (의원안 6건 + 정부안반영) 원안가결
15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 박홍근 의원안	2020년 일몰도래 조세특례 정비 및 일몰연장 특정 사회기반시설에 집합투자기구 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대안 반영 폐기 대안 반영 폐기	위원회대안 (의원안 60건 + 정부안반영) 원안가결

주: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한 18건의 개정안 중 기획재정부위원회 소관이 아닌 1건의 개정안은 정부위원회 소관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안)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 (국세기본법)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등
 - 조세정책의 평가·연구 지원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공개 확대를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세 표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기초자료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자료(예: 소득세 신고자료)
 - 현행은 국회예산정책처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이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초자료(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 등)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 내 국세통계센터 내에서만 이용 가능
 -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소득세에 한하여 국세통계센터 외의 장소에서도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³⁾도 일반 국민으로 확대

- (소득세법)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금융투자상품 세제 개편 등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조정하면서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3%p 인상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수는 현행 7개에서 개정 후 8개로 확대

3) 종전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제7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에서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

1.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기초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 라.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

현 행		개 정	
과표(구간 수 7개)	세율	과표(구간 수 8개)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좌동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좌동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좌동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좌동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좌동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좌동
5억원 초과	42%	5억원 초과	42%
		10억원 초과	45%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금융투자 과세체계를 2023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0.1%p 인하
 -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2단계 누진세율 (20%/25%)로 분류과세

[표 3] 금융세제 개편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23년 시행)	(금융투자소득 신설) 과세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을 의미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 (분류과세) 다년간 누적 이익 발생 또는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 (손실공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세율)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은 25% (과세방법) ①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반기별 원천징수, ②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반기별 예정신고 ③ 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5월말)
펀드 과세체계 개편 ('23년 시행)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방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방식으로 전환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 종전 비과세되던 펀드 이익에 대해 전면 과세) 펀드 간·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 허용
증권거래세 인하 ('21~'23년 시행)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코스닥 ('21~) 0.23%/('23) 0.15%, 코스피 0.08%/0% *(현행) 코스닥 0.25%, 코스피 0.1%

-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여,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과세(2022년 이후부터 시행)
- (법인세법)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등
 -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종합부동산세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신고 허용 등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받을 수 있도록 허용

[표 4]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요내용

	현행	개정
단독 명의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60세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5년이상 보유 20~50%	(좌 동)
부부 공동명의	12억원 기본공제	(1)과 (2) 중 선택 가능 (1) 12억원 기본공제 (2) 9억원 기본공제+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상향 등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
-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 등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열매’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 추가
 - 현행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연초의 ‘잎’이 원료)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과세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2년간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및 뉴딜펀드 과세특례 신설 등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씩 인상

[표 5]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 한국판 뉴딜사업 지원을 위해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투자금액 2억원 한도)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기간 내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적용기간: (현행)2020.1.1.~2020.6.30. → (개정)2020.1.1.~2021.6.30.
-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투자세액공제 단순화를 위해 기존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재설계

[표 6]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일반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일반/중견/중소기업 공제율(%)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 - (적용기한) 미설정 ※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 신탁세제 개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추어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 부과 등
 - 신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법률관계

[표 기] 신탁세제 개편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과세체계 정비	(소득세·법인세)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조세회피 방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소득세·법인세) 위탁자를 실질적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 부과
新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상속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됨을 명확화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⁴⁾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1~2025년 동안 39 억원(연평균 8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⁵⁾
- 소득세(+7.5조원): 소득세율 인상(4.8조원), 금융투자소득 과세(2.9조원)
 - 법인세(-2.3조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2.1조원)
 - 부가가치세(-1.2조원):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1.1조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0.2조원)
 - 기타: 증권거래세율 인하(-10.7조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5.5조원)

[표 8]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¹⁾	합 계
순액법	448	10,335	-18,922	6,308	532	-1,299
소득세	3,351	7,842	4,583	6,248	403	22,427
법인세	-4,102	-398	-173	-73	-73	-4,818
부가가치세	-1,658	-1,052	276	-104	-111	-2,650
증권거래세	-5,817	-188	-24,837	-893	-892	-32,627
종합부동산세	7,486	3,435	1,024	942	1,005	13,892
기타	1,188	696	205	188	201	2,478
누적법	448	10,783	-8,139	-1,831	-1,299	-39
소득세	3,351	11,193	15,776	22,024	22,427	74,772
법인세	-4,102	-4,500	-4,672	-4,745	-4,818	-22,838
부가가치세	-1,658	-2,710	-2,434	-2,539	-2,650	-11,992
증권거래세	-5,817	-6,005	-30,842	-31,735	-32,627	-107,026
종합부동산세	7,486	10,921	11,945	12,887	13,892	57,131
기 타	1,188	1,884	2,089	2,277	2,478	9,914

주: 1) 감가상각 가속상각 특례 등 2025년 이후에도 세수변화가 발생하는 항목의 경우 2025년 이후의 세수효과를 포함

1. 순액법은 각 연도에 전년 대비 증가한 세수를 집계하는 방식이며,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한 것임

4) 본 장의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0년) 대비 증가한 누적세수를 세수효과로 선정하는 방식인 누적법을 기본으로 사용

5)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세법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이며, 확정된 2021년 총수입 예산은 부록에서 다시 설명

[표 9]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추계

(단위: 억원)

세법개정 주요 항목	연평균	'21~'25 누적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9,645	48,226
(소득세) 금융투자소득 과세	9,808	29,423
(소득·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4,267	-21,33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2,245	-11,22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467	-1,866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율 인하	-21,405	-107,026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10,996	54,979

-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국회에서 수정·확정된 사항의 세수효과는 당초 세법 개정안 대비 2021년 635억원 감소(2021~2025년 누적 -6,740억원)⁶⁾
-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회에서 수정·확정된 사항에 따른 세목별 세수효과
 - 소득세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5년간 -75억원
 - 법인세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5년간 -595억원
 - 대형조합법인(매출액 1천억원 초과,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유지: 5년간 -3,513억원
 - 기타
 - (부가가치세)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모든 선박으로 확대: 5년간 -37억원
 - (개별소비세·교육세) 원료용 증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5년간 -1,120억원

6)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산정

[표 10]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사항의 세수효과 변동내역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소득세	-15	-15	-15	-15	-15	-7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15	-15	-15	-15	-15	-75
법인세	-119	-959	-991	-1,021	-1,053	-4,14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119	-119	-119	-119	-119	-595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9	-9	-9	-9	-36
조합법인과세특례 대형조합법인 유지		-831	-863	-893	-925	-3,513
부가가치세	-9	-10	-10	-10	-10	-51
연안화물선용 경우에 대한 유류세 감면 모든 선박으로 확대	-7	-7	-7	-7	-7	-37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조정 미반영	-2	-3	-3	-3	-3	-14
기타	-492	-495	-495	-495	-495	-2,471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24	-224	-224	-224	-224	-1,120
무관세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미반영 등	-268	-271	-271	-271	-271	-1,351
총 합계	-635	-1,479	-1,511	-1,541	-1,574	-6,740

주: 1. 일몰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하고 세수효과를 추계
2.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산정

5 주요 심사 쟁점

- 2020년 정기회 심사대상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신설안 등 정부·여당과 야당간 쟁점법안 포함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등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심도 있는 논의 진행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관련 안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상향조정(정부안)

[표 1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개정내용

(단위: %)

과세표준	현행	개 정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40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42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42
10억원 초과		45

[표 12]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연혁

(단위: %)

2012 (5단계)		2014 (5단계)		2017 (6단계)		2018 이후(현행) (7단계)	
과표	세율	과표	세율	과표	세율	과표	세율
1,200만원 이하	6	좌동	6	좌동	6	좌동	6
1,200 ~ 4,600만원	15	좌동	15	좌동	15	좌동	15
4,600 ~ 8,800만원	24	좌동	24	좌동	24	좌동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 1.5억원	35	좌동	35	좌동	35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38	1.5 ~ 5억원	38	1.5 ~ 3억원	38
				5억원 초과	40	3~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주: 시행연도 기준

◦ 주요 심사의견

[표 1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세입여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부담과 사회적 연대가치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필요함. 또한 종합소득금액 5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보다 세분화(5억/7억/10억원 초과)하여 세율을 차등화할 필요(2020.11. 6,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심화되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필요(2020.11.10,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반대 의견	- 소득세 최고세율이 2012년 이후 여러 차례 인상하였기 때문에 일부 계층에 세 부담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2020.11.10,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 (결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42%에서 45%로 세율을 올리는 안(정부안)으로 채택

□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 (관련 안건) 개인유사법인 등 특정내국법인의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려는 안(정부안)
 - (대상 법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시행령으로 규정
 - (과세 방식)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간주금액 =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지분비율

◦ 주요 심사의견

[표 14]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정부 제안취지	-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유보)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어, 특정 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필요(2020.11.26.,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 분	심사 의견
반대 의견	- 개인유사법인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대상 법인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2020.8.2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중소기업의 피해 가능성, 향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 환급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재검토 필요(2020.10.8.,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에서 해운업, 부동산업 등 일부 산업분야는 유보금을 적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 제기(2020.10.8.,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고, 초과유보소득의 자의성, 중소기업 등의 반대이견, 사내유보금을 통한 기업투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2020.10.8.,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관련 투자위축, 해외유턴기업 방해 등 기업들의 반대이견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 제기(2020.11.6.,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기타 의견	-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 다만 그 해법은 과세 강화보다는 해당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또는 보다 근본적으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의 지나친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2020.11.26.,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 (결론)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안은 채택되지 않음

□ 금융투자상품 세제 개편

- (관련 안건) 2023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정부안)
- (반대 의견) 내용이 방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금년 정기회에서 성급히 결론내기 보다 국회 소관 위원회 주관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2020.11.27.,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 (결론) 금융투자상품 세제 개편이 큰 규모의 개편인 만큼 2023년 시행되기까지 업계·정부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상당부분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금년 정기회서 정부안대로 개정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확대

- (관련 안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 추가하는 안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하는 안(정부안)
 -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연초의 ‘잎’이 원료인 것에 한정)
- 주요 심사의견

[표 15]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확대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의견	-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뿌리·줄기)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의 출현으로 예상되는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종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2020.11.20.,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반대의견	- 세율인상이 근거가 되는 쉐련담배 1갑에 해당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흡입횟수에 대한 공신력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와 세율 인상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신규 과세대상 담배(액상형 전자담배)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2020.11.20.,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 니코틴 용액 1ml당 제세금: (현행)1,799원 → 3,598원

- (결론) 과세대상 담배 범위를 연초의 뿌리·줄기·열매 등이 원료인 경우까지 확대하는 안은 채택되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안은 채택되지 않고 현행 세율(370원/ml)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 (부대의견) 보류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율조정에 대해서 위해성 및 흡입량 등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복수의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율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안

- (관련 안건)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완화 및 사후관리 의무 완화 등(홍석준의원안, 이영의원안, 김용판의원안, 권성동의원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등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권성동의원안), 상속세및증여세의 세율인하안(권성동의원안),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안(권성동의원안)

[표 16] 기업상속공제 완화 관련 세법개정안

	현행	홍석준 의원안	이영 의원안	김용판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
중견기업 범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매출액 1조원 미만	매출액1조원 미만	-
피상속인 계속 경영요건	10년	5년	-	5년	5년
피상속인 경영기간별 공제한도액	10~20년:200억원 20~30년:300억원 30년 ~:500억원	5~20년:200억원 20~30년:300억원 30년 ~:500억원	10~20년:500억원 20~30년:700억원 30년 ~:1천억원	5~20년:400억원 20~30년:600억원 30년 ~:1천억원	5~20년:200억원 20~30년:300억원 30년 ~:500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50%(상장30%) 10년 이상 보유	30%(상장15%) 5년 이상 보유	-	-	-
상속인 가업종사요건	2년이상 가업종사	1년 이상 가업 또는 동종업 종사	-	-	-
사후관리기간	7년	5년	-	5년	5년
연도별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	80%	-	-	60%	삭제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유지 요건	7년간 상속당시 유지	5년간 상속당시 유지	-	5년간 상속당시 유지	5년간 상속당시 80% 유지

◦ 주요 심사의견

[표 17] 기업상속공제 완화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의견	- 기획재정부는 외국투자자본으로부터 성실히 일하는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검토할 것(2020.11.3.,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대의견 채택)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반면 기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이 엄격하여 동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어 상속인이 경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부작용 등 기업 환경을 고려하여 상속세 부담의 완화가 필요(2020.11.13.,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반대의견	- 상속세 최고세율은 높은 반면 비과세·공제제도로 상속세 실효세율은 높지 않아 세율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 또한 기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2019년 세법개정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였다는 점, 자산불균형 해소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기존의 세법 개정 기초와 배치(2020.11.13.,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 (결론) 기업상속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안은 채택되지 않고, 대신 부대의견 채택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고용에 유인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 정기 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6 의원발의안 반영 및 정부제출안 수정에 따른 세법개정안 처리

-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반영된 안건은 총 35건
 - 「국세기본법」 4건, 「소득세법」 5건, 「조세특례제한법」 11건 등

【표 18】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법률명	개정안
「국세기본법」 (4건)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규정 신설) 기동민 의원안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박홍근 의원안 (경정 등의 청구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통지) 김수흥 의원안 (법률용어 정비) 고용진 의원안
「소득세법」 (5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김주영 의원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조경태·김경협 의원안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양도소득세 과세 등) 이상직 의원안 (주식·채무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등) 유동수 의원안
「법인세법」 (2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제도 신설) 김수흥 의원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하향 조정 등) 김경협 의원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1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 일정비율 상향 입법 및 지출 의무 강화) 윤후덕 의원안
「종합부동산세법」 (2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대우) 윤희숙 의원안 (법인 보유 공공임대주택, 일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종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 박형수 의원안
「주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안)」(3건)	(주류 행정에 관한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법) 고용진 의원안 2건 (주류 면허발급 제한사유 완화) 김수흥 의원안
「국세징수법」 (1건)	(법률용어 정비) 고용진 의원안
「관세사법」(1건)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최인호 의원안
「관세법」(5건)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에 업무종사자의 인적사항 포함) 조정식 의원안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신설) 홍익표·조해진 의원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감면 규정 신설) 고용진·추경호 의원안
「조세특례제한법」 (11건)	(특정 사회기반시설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박홍근·이광재 의원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윤후덕·이명수·전용기·추경호 의원안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가입연령요건 조정) 김경협 의원안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김경만 의원안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정성호 의원안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조건부 면세) 추경호·고용진 의원안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16건의 주요사항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

[표 19]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법률명	수정사항
「국세기본법」 (2건)	-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위반 과태료 삭제 - 중장기 조세정책운영계획 주기 유지
「소득세법」 (2건)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법인세법」 (2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2건)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의 전환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개별소비세법」 (1건)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현행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7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유지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사항 삭제 - 특정내국법인(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사항 삭제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신설

- 제21대 국회에서 2020년 11월까지 제안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정부제출 세법개정안 375건 중 128건이 처리
- 조세소위는 총 228개의 법률안을 논의하였으며, 조세소위 논의 법률안 중 125건)을 처리
 - 처리된 128건의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 중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 120건은 대안반영폐기 하였으며, 11건의 위원회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

[표 20] 2020년 제21대 국회 세법개정안 처리 현황

(단위: 건)

의원·정부 제안 법안	위원회안				위원회안 (대안)
	조세소위 상정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375	228	4	4	120	11

7) 2020년 7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세법 개정안 3건은 조세소위에 회부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의결

7 향후 논의 과제

- 2020년 세법개정안 심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중장기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추후 논의해야 할 과제 상존
- 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향후 보완책 마련
 - 2023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금융세제 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2020.11.27.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향후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상속세 과세체제 개편
 - 기업의 투자·고용 유인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상속세 부담을 인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상충됨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책 마련 필요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고용에 유인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속세 과세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 정기 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 마련
 - 인구고령화 및 복지 확대 정책으로 조세의 세입 확충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정부의 중장기 세입확보를 위한 계획이 구체화될 필요
 - (2020.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정부는 중장기 재원조달 방식과 계층별 세부담 배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II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1 국세기본법

가. 총괄

- 「국세기본법」은 조세제도 합리화 및 공평과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
 -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등 대부분 정부안대로 개정
 - 다만,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주기(1년 → 5년) 변경 등’의 정부안은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다른 첨부서류 작성주기(매년)와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되지 않고 현행 유지
 - ‘공평과세 측면에서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기동민 의원안)’,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박홍근 의원안)’와 ‘국세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경정청구 처리 지연시 진행상황 통지(김수홍 의원안)’ 등의 의원안 반영
- 조세제도 합리화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제외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명확화
 - 상장법인은 법인 재산을 대주주 사적 목적으로 유출하는 것이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한 「상법」의 개정사항(2011. 4. 14. 개정)을 반영하여 무한책임사원 등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 이견 없이 정부안대로 개정
- 가산세 부담 적정화
 - 가산세 감면조정에 대해 5개의 의원안(박홍근·김경협 의원안 및 3개의 기동민 의원안)과 2개의 정부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 상속·증여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 신설, 가산세 한도 조정 및 한도 적용대상은 정부안대로 개정
 - 기동민 의원안의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규정은 수정안으로 개정되었으며,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는 박홍근 의원안으로 개정

- 가산세 감면제도는 가산세 부담의 적정화 및 과세형평(국내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

□ 납세 편의 제고

-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 현재 국세청 내 국세통계센터에서만 제공되는 기초자료 가운데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
 -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표본자료는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자료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요건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가 완화되어 개정

□ 이외에 「국세징수법」과의 조문 상호 이관과 법률용어 정비 등 법률 체계정비

-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정 규정을 「국세징수법」에서 동법으로 이관하고, 송달 지연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

나. 주요 논의 사항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등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상장 법인을 제외하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을 명확히 규정
- 개정취지: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시행

[표 2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등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한책임사원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한책임사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명회사의 사원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1명

□ 주요 논의 사항

- 상장법인은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외부감사, 공시의무 등 각종 감시·견제장치가 존재하여 법인 재산을 대주주가 사적 목적으로 유출하는 것이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점 등을 반영
-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한 「상법」의 개정(2011. 4. 14.)을 반영하여 출자가액과 관계 없이 모든 채무에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가액의 한도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을 명확한 규정 필요

(2) 가산세 감면 조정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개정내용: 가산세 감면조정
 - 상속·증여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 신설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및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등
- 개정취지: 가산세 부담 적정화 및 조기납부 유도 등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표 22] 가산세 감면조정의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상속·증여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정부안)	(신설)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세액 등을 결정 및 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기동민 의원안 수정)	(신설)	- 3개월 이내: 100%(의원안 50%) - 3~6개월 이내: 200%(의원안 30%) - 6개월 초과: 300%(의원안 20%)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가산세(박홍근 의원안)	(신설)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가산세 한도(정부안)	(신설)	공익법인의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한도(5천만원) 적용대상으로 추가

- 개정취지: 가산세 부담 적정화 및 조기납부 유도 등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 최근 개정 연혁

- 2019년 세법개정시 무신고 가산세,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등 가산세 정비

[표 23] 2019년 세법개정시 가산세 정비현황

주요 내용	종 전	2019 개정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조정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1년 이내: 20% 감면 1년~2년 이내: 10% 감면	• 감면을 조정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1~3개월 이내: 75% 감면 3~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1년 이내: 30% 감면 1년~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2년 이내: 10% 감면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1~6개월 이내: 20% 감면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1~3개월 이내: 30% 감면 3~6개월 이내: 20% 감면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기한 후 신고 허용 - 기한 후 신고자 추가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정비	-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가산세별로 각각 규정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 :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때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 때 -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하는 때

□ 세수효과

◦ 추정근란

- 추계 기간의 상속 증여세 지연납부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근란

□ 주요 논의 사항

◦ 일반 세목 가산세의 경우 지연납부 기간에 따라 가산세 부담에 차이가 있지만, 현행 인지세의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종이문서에 부과되는 인지세에 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른 세목보다 납부지연에 대한 강화 필요

- 이에 인지세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율을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적용세율은 기동민 의원안 보다는 높은 세율로 개정

◦ 간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 조항은 세법상 의무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하여 그 제도가 자리잡힌 상황에서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내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불성실 납부의 경우 특별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

- 간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는 2015년 전자적 용역⁸⁾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간편사업자⁹⁾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제도를 정착할 목적으로 도입

(3)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규정 마련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국세통계센터 이외에도 표본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표본자료: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형태로 처리한 자료

◦ 개정취지: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료이용자가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조세정책연구 목적으로 2014년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통계자료 제공 등 확대

8)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소프트웨어 등 전자역 용역

9) 간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위탁매매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사업자

[표 24] 조세정책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범위 개정현황

2014	2017	20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조세정책 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조세정책 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	조세정책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통계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내 에서 개별납세자를 직·간접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초자료 제공

주: 개정기준

□ 주요 논의 사항

- 정부가 보유한 과세정보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 및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조세정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의견에 이견 없음
- 다만, 비식별화된 자료이므로 비밀유지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원안을 수정하여 개정

[표 25]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제39조)	모든 법인의 과점주주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제외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인 무한 및 유한책임사원 명확화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으로만 규정	1. 무한책임사원: - 합명회사의 사원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유한책임사원: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유한회사의 사원
가산세 감면 제도 조정		
상속·증여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제47조의4)	(신설)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 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세액 등을 결정 및 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제47조의4)	(신설)	인지세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 이내 납부시 감면 - 3개월 이내: 100% - 3~6개월 이내: 200% - 6개월 초과: 300%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가산세 (제14조의2 등)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가산세 한도 (제49조)	(신설)	공익법인의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한도(5천만원) 적용대상으로 추가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제52조)	(신설)	경정청구, 불복결정, 판결 등이 없이 고충민원 처리 결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지급에서 제외
국세행정 절차 개선		
경정 등의 청구처리 지연시 진행상황 통지 (제42조의2)	(신설)	경정 등의 청구처리 지연으로 2개월 이내 통지가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 이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 통지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제85조의6제8항 신설)	(신설)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부여
법률 체계 정비		
「국세징수법」과의 조문 상호이관 (제42조제2항 신설 등)	(신설)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국세징수법」에서 동법으로 이관하고, 송달지연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체납처분’ 용어 변경 (제2조 등)	체납처분, 체납처분비, 국세체납처분	강제징수, 강제징수비 국세강제징수

2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가. 총괄

- 소득세 분야 개정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금융투자소득 및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등을 마련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
 - 2017년 이후 세 번째 최고세율 인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
 - 2023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 개편 내용이 방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금년 정기회에서 결정내기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2023년 시행되기까지 업계·정부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정기회에서 정부안대로 개정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위해 과세대상·소득구분·과세방법 등을 「소득세법」에 규정
 - 2022년부터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거래(양도·대여)에서 파생되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금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제금액 증가를 반영하여 급여수준별 기본 공제한도를 각각 30만원 인상
 - 총급여규모(7천만원 이하/7천만~1.2억원/1.2억원 초과)별 공제한도: 200/250/300만원 → 230/280/330만원
 -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융자 집합기구 및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투융자집합기구 투자: 투자금액 1억원 한도, 14% 분리과세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 투자금액 2억원 한도, 9% 분리과세

- 그 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 ISA 가입대상, 계약기간 등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대상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
 - 개정안이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함을 감안하여 정부안대로 개정

나. 주요 논의 사항

(1)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 신설 및 분류과세를 규정
 - 과세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금융투자 상품 내에서 손익통산과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
 - 개정취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방식 일원화 및 합리화를 통해 금융투자활성화
 - * 원본 손실의 위험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과 파생상품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표 26]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개정내용

	현행	개정
과세방법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분류과세 적용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액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이월공제		결손금 이월공제 5년 허용
기본공제	(신설)	(국내 상장주식 등) 5천만원 (기타-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 250만원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신고납부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반기별) 과세종료 또는 납세의무자 예정신고

□ 세수효과

- (2023년) 5,885억원 (연평균) 9,808억원 (2023~2025년) 29,423억원
 -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을 기준으로 2021년 이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3억원이 될 것을 전제로 추정

□ 주요 논의 사항

- 금융투자소득 과세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2023년 시행일까지 보완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정부안대로 통과
- 2019년 정기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대의견에 따라 정부가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
- 다수의 의원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공존, 기본공제 수준(상장주식 등 5천만원) 및 이월공제 기간(5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세중립성 검토 및 조세회피 방지 방안 마련 요구

(2)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과표 10억원 초과 42% → 45%
- 개정취지: 고소득층 과세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 시행일: 2021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표 27]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내용

(단위: %)

과 표	현 행	개 정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 ~ 4,600만원	15	(좌동)
4,600 ~ 8,800만원	24	(좌동)
8,800 ~ 1.5억원	35	(좌동)
1.5억 ~ 3억원	38	(좌동)
3억 ~ 5억원	40	(좌동)
5억~10억원	42	42
10억원 초과		45

□ 최근 개정 연혁

[표 28]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연혁

(단위: %)

2012 (5단계)		2014 (5단계)		2017 (6단계)		2018 이후(현행) (7단계)	
과표	세율	과표	세율	과표	세율	과표	세율
1,200만원 이하	6	(좌동)	6	(좌동)	6	(좌동)	6
1,200 ~ 4,600만원	15	(좌동)	15	(좌동)	15	(좌동)	15
4,600 ~ 8,800만원	24	(좌동)	24	(좌동)	24	(좌동)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 1.5억원	35	(좌동)	35	(좌동)	35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38	1.5 ~ 5억원	38	1.5 ~ 3억원	38
				5억원 초과	40	3~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주: 시행연도 기준

□ 세수효과

- (2021년) 5,512억원 (연평균) 9,645억원 (2021~2025년) 48,226억원
- * 대상자 약 1.6만명(종합소득자, 근로소득자, 양도건수 포함),
대상자 평균실효세율: 종합소득자 +1.7%p, 근로소득자 +0.6%p 전망

□ 주요 논의 사항

- 정부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고자 소득세율 인상안을 제안
-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세율 인상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소득재분배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고소득자의 사회적 의무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세율인상 결정
- 다만,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득재분배 제고의 수단으로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주로 활용하며,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제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향후 복지수요 등을 감안한 중장기적 재원조달 방안과 배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가입대상 확대, 자산 운용범위 확대, 계약기간 및 계좌보유기간 완화, 납입한도 이월, 적용기간의 폐지
- 개정취지: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ISA 가입 활성화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단, 법 시행 전 가입자 중 개정 규정에 따라 가입요건 미충족 시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표 2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현 행	개 정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가입제한: 직전 과세기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19세 이상 거주자 (단, 15~19세 미만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 가입제한: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과세대상자
자산운용범위	(펀드) 집합투자증권, 리츠 (파생결합증권) ELS·DLS, ELB·DLB (예·적금) 예적금·예탁금·예치금·RP	현행 + 국내 상장주식
의무가입기간	(일반형) 5년 (농어민형, 서민형) 3년	3년 이상 (계약 만기시 연장 가능)
이월납입	불가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적용기한	2021.12.31.	폐지

□ 최근 개정 연혁

- 2016년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
- 2018년 비과세한도 인상 및 중도 인출 허용
 - 비과세한도: 서민형, 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 확대(종전 250만원 → 400만원)
 - 중도인출: 퇴직, 폐업 등 제한적 허용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
- 2019년 가입대상 확대
 - 소득이 있는 자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 가입자 및 가입액 규모 등의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전면 개편
 - 최근 ISA 가입자 수 정체, 계좌의 대부분이 연간 납입한도에 못 미치는 소액계좌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 수용
- 다만, 자본이득 및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상충되고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었으나, 정책대상자의 포괄범주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함이 감안
- 향후 저축관련 조세지원 혜택을 ISA로 통합하려는 방침에 따라 기타 저축지원 관련 세제혜택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4)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
 -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소득 지급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
- 개정취지: 해외 과세 사례 및 다른 소득과의 형평 등 고려하여 과세 체계 마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표 30]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행	양경숙 의원안	정부안	개정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소득	가상자산 양도소득, 대여소득	가상자산 양도소득, 대여소득
소득구분		양도소득(분류과세)	기타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분리과세)
세율	(신설)	20%(5~20% 범위에서 탄력세율)	20%	20%
과세최저한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신고납부		반기 말일 2개월 이내	차년도 5월	차년도 5월
시행시기		2021.1.1.	2021.10.1.	2022.1.1.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및 양도차익 등에 대한 가용자료 부재로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안(정부안)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안(양경숙 의원안)을 함께 논의하였으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정부안 채택
 -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는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보다는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제기
 - 업계의 과세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시기를 기존 '2021년 10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
 - 가상자산 과세로 인해 거래소 밖 거래가 증가할 유인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공신력 있는 거래소를 원하는 투자자가 제도권 내의 거래소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 이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5)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 특정사회기반시설에 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50%이상)을 투자하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9%의 세율로 분리과세
 - 개정취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 사회기반시설 공급 등 생산적 투자처 유도 및 뉴딜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 일몰기한: 2022년 12월 31일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투자 규모 및 배당소득에 대한 합리적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정부의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방안'(2020.9.3.)을 입법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취지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안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정부안)과 함께 논의
- 다만, 민간투자 촉진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¹⁰⁾으로 충분하며 민간의 자율적 투자 의사 결정에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었으나,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필요성을 감안하여 세제지원을 결정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와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적용대상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및 지원수준에서 차이

[표 31] 개정안 및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구분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대상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공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민간투자법)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민간투자법)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법)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대상	뉴딜 인프라(의무투자비율 50%이상)	뉴딜 인프라 포함한 인프라
지원수준	투자금액 2억원까지 9% 분리과세	투자금액 1억원까지 14% 분리과세

주: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집합투자기구는 정부의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방안'(2020.9.3.)에 따름
 2. 법률명은 다음과 같은 약칭을 사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10)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로,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20.7.23.)의 하나로 추진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축소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과세특례 적용기한 단축 및 적용소득 범위 명확화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¹¹⁾12) 적용기한을 2년 단축(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유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해 적용
 - 과세특례 적용소득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됨을 명문화¹³⁾
 - 2020년 7월 11일 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동 과세특례 적용 제외(「민간임대주택법」 개정반영)
- 개정취지: 임대주택 특례 제도 정비 및 관련 조문 명확화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표 3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정안 및 개정내용

	현행	강병원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정부안	개정
적용 기한	2022.12.31.	과세특례 즉시폐지	2020.12.31	2020.12.31	2020.12.31. (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유지)
적용 소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해당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한정	해당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한정
적용 제외					2020.07.11.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제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반영)

- 11)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70%) 적용
- 1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고, 연 5% 범위에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합계액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13) 양도소득을 임대한 기간과 임대하지 않은 기간으로 배분하여 임대한 기간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2014년 시행
 - 공제율: 10년 이상 임대시 공제율 60%
- 2015년 공제율 변경
 - 공제율: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60%
- 2016년 적용대상 확대, 공제율 변경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포함
 - 공제율: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70%
- 2020년 적용기한 신설
 - 2022년 12월 31일 까지 등록된 주택에 한하여 과세특례 적용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양도시기, 매매가격 및 취득가격에 대한 자료 등의 부재

□ 주요 논의 사항

- 빈번한 정부정책 변경과 임대여부에 따른 기간별 양도소득 배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수정된 정부안대로 통과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폐지, 적용기한 축소, 적용 소득 범위를 명시하는 안(강병원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정부안)에 대해 논의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2014년 처음 시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정책변경에 따른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상실,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할 필요성 제기
 - 공시가격의 변화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을 임대한 기간과 임대하지 않은 기간으로 배분하는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 제기
 - 정부는 축소된 등록기한이 법개정 시기보다 미래이므로 등록기한 축소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임대한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는 입장

[표 33] 소득세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금융투자소득 과세 신설		
금융투자소득 신설 및 소득 정의 (소득세법 제4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신설)	- 이익의 누적 발생, 금융투자시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 - 2023.1.1. 시행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및 과세표준, 세액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4 ~ 제87조 의20)	(신설)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등: 5천만원 - 해외·비상장주식 등: 250만원 (손실공제) - 금융투자 소득·손실 합산, 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세율) - 3억원 이하/초과: 20%/25%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87조의21 ~ 제87조의27, 제127조 ~ 제129조, 제143조의2, 제143조의3, 제155조의2, 제164조)	(신설)	(원천징수) - 금융회사 등이 반기마다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신고기한) -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예정 신고 기한은 금융투자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변경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46조)	- 적격집합투자기구 환매이익: 배당소득세 - 파생결합증권: 배당소득세 - 파생결합사채: 배당소득세	- 적격집합투자기구 환매이익: 금융투자소득세 - 파생결합증권: 금융투자소득세 - 파생결합사채: 이자소득세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외 (소득세법 제88조, 제92조~제94조, 제99조, 제102조~제105조, 제114조)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 주식 등: 양도소득세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가상자산 과세 신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21조)	(신설)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소득, 대여소득 (과세방식) - 기타소득 (분리과세) - 2022.1.1. 시행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및 세액계산 (소득세법 제14조, 제37조, 제64조의3)	(신설)	(필요비용) -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가상자산 양도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6)	(신설)	- 비거주자 원천징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여 - 원천징수금액(필요경비 확인 가능한 경우): 지급금액의 10%와 가상자산과세표준의 20% 중 적은 금액
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소득세율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2%	소득세율 - 과세표준 5억원~10억원: 42%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45%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8호)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5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5억원~10억원 52%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55%
소비·투자 활성화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4조)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6조)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26조의2)	(신설)	(과세대상)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투자한도) 2억원 (세율) 9%(분리과세) (적용기한) 2022.12.31.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제27조)	(신설)	(과세대상) -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투자한도) 1억원 (세율) 14%(분리과세) (적용기한) 2022.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한시 확대 (조특법 제126조의2제10항)	(공제한도)	(공제한도) 30만원 상향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1.2억이하	250만원
	1.2억 초과	200만원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1.2억이하
		280만원
		1.2억 초과
		230만원
서민·소상공인 지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공제기간) 10년	(공제기간) 15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81조의 11)	(가산세율) - 미제출시: 0.5% - 지연제출시: 0.25%	(가산세율) - 미제출시: 0.25% - 지연제출시: 0.125%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요건 조정 (조특법 제95조의2제1항, 제122조의3제3항)	12% 공제율 적용 기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2% 공제율 적용 기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정비 (조특법 제96조제2항)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8년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10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진등록 말소 등의 경우 추징 면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기간 연장 (조특법 제96조의3제1항)	(적용기한) 2020.6.30.	(적용기한) 2021.6.30. 공제기간 포함 일정기간 내 임대료 등 인상 시 공제세액 추징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조특법 제100조의3제5항 제2호나목)	출별이 가구요건 판정 시 연령요건: 직계존속 70세 이상	출별이 가구요건 판정 시 연령요건: 중증장애인의 경우 미적용
근로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조특법 제100조의6 제11항)	(신설)	거주자 동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위임 세무공무원 등이 환급대상자 의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가능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조특법 제100조의8 제3항)	(지급기한) -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기한) -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저축 지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7조의2)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8조의2)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9조의3, 제88조의5)	(적용기한) 2020.12.31. (예탁금 가입연령) 20세	(적용기한) 2022.12.31. (예탁금 가입연령) 19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전면 개편 (조특법 제91조의18)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가입대상) - 19세 이상인 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운용기관, 운용재산) - 운용기관: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 운용재산: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등	(운용기관, 운용재산) - 운용기관: 투자중개업자 추가 - 운용재산: 국내 주권상장법인 주식 추가 -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계약기간 및 계좌보유기간) - 계약기간: 5년 - 의무 계좌보유기간: (청년, 서민, 농어민) 3년, (그외) 5년	(계약기간 및 계좌보유기간) - 계약기간: 3년 - 의무 계좌보유기간: 3년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납입한도) - 1~4년차: (2×n)천만원, - 5년차 이후: 1억원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폐지
신탁세제		
신탁소득에 대한 위탁자 과세 확대 (소득세법 제2조의3)	(신설)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인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함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세 신설 및 신고·납부 절차 (소득세법 제94조, 제99조, 제102조~제105조, 제107조)	(신설)	- 신탁 수익권의 양도소득금액 구분계산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3억원 이하/초과: 20%/25%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과세체계 합리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시행령 규정: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비과세 근로소득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소득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구분 명확화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반복적 활동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	기타소득으로 규정 (사업장을 갖추는 등의 경우를 제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시 주택 등 제외 (조특법 제32조제1항)	(신설)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축소 (조특법 제9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등록기한: 2022.12.31. - 양도소득세 공제율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등록기한: 2020.12.31. *건설임대주택 현행 유지 - 양도소득세 공제율 적용 :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
기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조정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대상 주택분양권 기준가액: 4억원 - 대상자: 외국인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대상 주택분양권 기준가액 상향: 5억원 -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등 (소득세법 제57조)	(이월공제)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 기간 종료일의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 (이월공제) 10년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에 맞춰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정비 (소득세법 제64조의2제3항)	(의무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임대주택: 4년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8년 (신설)	(의무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임대주택: 10년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10년 (추징규정 단서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진 등록말소 등의 경우 추징 면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 기한 폐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제1호나목)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폐지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소득세법 제160조의3)	(신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 등 면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의 제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대상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대상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한 보험회사 추가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69조의2제1항)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69조의3제1항)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77조의3제1항)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5조의8제1항)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5조의10제1항)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99조의4)	- (요건) 지정지역에 소재한 고향주택, 대지면적 660m ² 이하 - (적용기한) 2020.12.31.	- (요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고향주택, 대지면적 조건 삭제 - (적용기한) 2022.12.31.

주: ()안의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가. 총 괄

- 법인세 분야 개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투자 활성화 및 고용지원에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에 중점
 - 기존 10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재설계하는 정부 원안에 합의
 - 세액공제 대상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 전반(토지, 건물, 차량 제외)으로 확대
 -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일반 1%, 중견 3%, 중소기업 10%)와 함께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전기업 3%)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 보다 2%p 높은 우대 공제율 적용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투자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결손금, 세액공제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 확대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10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통해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확대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는 경우 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하여 세액감면 적용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몰기한 연장과 함께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대안으로 개정
 - 중소기업 육아휴직 복직자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인 세액공제율을 3배 상향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30%, 중견기업은 15%로 상향
-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 등을 마련
 - 신탁재산 과세체계를 원칙적으로 실질수익자인 위탁자에게 과세하되, 수탁자의 선택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위해 과세대상·소득구분·과세방법 등을 「법인세법」에 규정
 -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농어민 및 서민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조합법인과

일반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행대로 모든 조합법인에 적용하는 수정안에 합의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안은 사내유보금을 줄이고 배당을 강제하게 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자본축적 저해로 인한 기업성장에 악영향을 우려하여 추후 논의 결정

□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조정안은 조세소위의 주요 쟁점으로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미도달

- 찬성 측 논거
 -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 및 세수증가라는 선순환 효과 유도 필요
 - 현재 법인세의 과표구간이 과다하여 조세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최근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므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
- 반대 측 논거
 - 법인세율이 투자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법인세율 조정이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
 - 코로나19 극복, 양극화·저출산 등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 시 세수감소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낮아지는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

□ 이외 투자지원,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의원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

- 투자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 30일로 일몰이 종료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2021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합의
-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부당공제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제도 신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비율을 지급금액의 0.5%에서 0.25%로 인하

나. 주요 논의 사항

(1)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재설계하고 지원대상 확대 및 공제수준 상향
 - 현행 10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 세액공제 대상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 전반¹⁴⁾으로 확대
 -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일반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전기업 3%)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경우 기본공제 2%p 우대
- 시행일: 2021년 1월 1일('20년, '21년 투자분은 기존·신설 제도 중 선택 가능)
- 일몰기한: 없음

□ 최근 개정 연혁

- 개별 시설·설비관련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일반기업을 중심으로 공제율이 축소되어 왔으나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개별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로 통합·정비
 - 2019년 세법개정은 경기대응을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

[표 34] 주요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개정 연혁(일반/중견/중소)

(단위: %)

	2016	2017	2018	2019 이후(현행)
연구인력개발설비	1/3/6	1/3/6	1/3/6	1/3/7
에너지절약시설	1/3/6	1/3/6	1/3/6	1/3/7
환경보전시설	3/5/10	3/5/10	1/3/10	3/5/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7/7	7/7/10	7/7/10	3/5/10
안전시설	3/5/7	3/5/7	1/3/7	1/5/10
생산성향상시설	3/5/7	3/5/7	1/3/7	1/3/7 (2/5/10) ¹⁾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3/5/7	1/3/6	1/3/6	1/3/6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신설	5/7/10	5/7/10	5/7/10

주: 1) 일반기업 '20년, 중소/중견기업 '20~'21년 공제율 한시 상향

1. 시행연도 기준

14) 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

[표 35]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단위: %)

	현행 (일반/중견/중소)	한병도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김수흥 의원안	김경만 의원안	정부안	개정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	-/2(수도권1)/3 * 위기지역 -/5/10 (*21.12.31.)	위키역 추가 (+인구감소 위기지역)					통합투자 세액공제로 개편
연구인력개발설비	1/3/7 (*21.12.31.)						
에너지절약시설	1/3/7 (*21.12.31.)						
환경보전시설	3/5/10 (*21.12.31.)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3/5/10 * 직장어린이집 10/10/10 (*21.12.31.)		5/10/10 ¹⁾ (*23.12.31.)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3/5/10 +2(최대)		통합투자 세액공제로 개편	
안전시설	1/5/10 (*21.12.31.)						
생산성향상시설	1/3/7 * '20~'21 한시 2/5/10 (*21.12.31.)						
의약품품질 관리개선시설	1/3/6 (*21.12.31.)						
초연결네트워크 구축시설	2(최대 3) (*20.12.31.)		5(최대 6) ²⁾ (*22.12.31.) 5G 이동통신 운용시설추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5/7/10 (*21.12.31.)				5/7/12 (*23.12.31.)		

주: 1) 2020.7.20.발의(의안번호 2102195)

2) 2020.11.2.발의(의안번호 2104865)

[표 36]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단위: %)

	추경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정부안	개정
통합투자 세액공제 신설	3/7/10 ¹⁾ (*23.12.31.)	3/5/10 (*22.12.31.)	1/2/5 (*23.12.31.)	기본공제 1/3/10+추가공제 3 (일몰없음) 단,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기본 3/5/12+추가공제 3	기본공제 1/3/10+추가공제 3 (일몰없음) 단,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기본 3/5/12+추가공제 3

주: 1) 2020.6.1.발의(의안번호 2100011)

- 세수효과
 - (2021년) -4,108억원 (연평균) -4,267억원 (2021~2025년) -21,335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개별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관련 의원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정부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안과 병합하여 조세소위원회 심사 진행
 - 의원안이 제안하는 개정 사항이 정부안의 지원대상 확대(일반 사업용 자산 전반) 및 공제수준 상향에 포함됨에 따라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정부안 채택
 - 다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에 따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기본 공제율 차이 확대가 중소기업의 성장 억제유인으로 작용할 우려 제기
 - 중견기업/중소기업 공제율 변화: (현행) 3%/7% 또는 5%/10%, (개정안) 3%/10%

(2)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10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개정취지: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 시행일
 - 결손금: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 세액공제: 2021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표 37]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결손금 이월공제	- 이월공제기간: 10년 - 이월공제한도 일반기업: 소득의 60% 중소기업: 소득의 100%	- 이월공제기간: 15년
「조특법」상 세액공제 이월공제	- 이월공제기간: 일반적인 세액공제 5년* *단, 창업초기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10년	- 이월공제기간: 10년
외국납부 세액공제 이월공제	- 이월공제기간: 5년	- 이월공제기간: 10년

[표 38]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추경호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공제기간	10년	15년	15년	15년	15년
공제한도	일반기업 60% 중소기업 100%	일반기업 80% 중소기업 100%	일반기업 60% 중소기업 100%	일반기업 60% 중소기업 100%	일반기업 60% 중소기업 100%
부칙 (적용 대상)	-	모든 미공제 이월결손금	2010년 발생분	2020년 발생분	2020년 발생분

□ 최근 개정 연혁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2008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이월공제 한도)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소득의 100%에서 2016년 80% → 2018년 70% → 2019년 60%로 하향

□ 세수효과

- (2032년) -4,801억원 (연평균) - 4,801억원 (2032~2036년) - 24,005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 이월공제기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해야할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
- 다만, 이월결손금의 경우 과거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적용 기간 및 공제한도 상향 수준을 두고 입장차 존재
 - 최근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과거 결손금까지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시
 -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공제한도 확대 및 소급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 조세소위 논의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으로 한정하여 2020년 발생 결손금부터 공제기한 확대를 적용하도록 한 정부안에 합의

(3)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및 일몰연장
 -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이 혼재되어 있는 세액감면 제도를 공장과 본사 이전으로 구분하여 재설계
 - 일몰기한 2년 연장
- 개정취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 지속적 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 일몰기한: 2022년 12월 31일

[표 39]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개정안 및 개정내용

	현행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개정
적용대상	- 2년 이상 공장 가동한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 3년 이상 공장 가동 또는 본사를 둔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	(현행)	- 3년 이상 공장 가동한 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 * 중소기업: 2년 이상 공장 가동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	- 3년 이상 공장 가동한 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 * 중소기업: 2년 이상 공장 가동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

	현행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개정
감면율	7년 100% +3년 50%	20년 100%	(현행)	(현행)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 수× 1,500만원 (청년근로자·서비스업 2,000만원)	
적용기한	2020.12.31.	2022.12.31.	2022.12.31.	2022.12.31.

□ 최근 개정 연혁

- 2015년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제도 합리화
 - 3년 연장: 2014.12.31. → 2017.12.31.
 - 감면 기산점 조정: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 법인의 수도권 밖 공장 및 본사 이전 감면대상 조정: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제외
- 2018년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3년 연장: 2017.12.31. → 2020.12.31.

□ 세수효과

-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 주요 논의 사항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되,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이 혼재되어 있는 세액감면 제도를 공장과 본사 이전으로 구분하여 재설계
- 한편, 정부안에는 지방이전에 따른 투자금액 및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비하여 일부 기업에게 과도한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한 감면한도 신설이 포함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 미흡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유지로 결정

(4)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신탁재산 과세방식 다양화,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특례, 신탁재산(수탁자 과세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의무 부담·이중과세 조정 등 실제적 사항 규정 및 법인세 과세대상 신탁의 설립 및 해산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
 -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과세하되, 위탁자가 실질수익자인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하고, 수탁자의 선택에 의해 법인세로 과세하는 방식 선택 허용
 - 수탁자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 특례: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를 위해 수탁자의 지위 및 납세의무 부담, 수익자의 보충적 납세의무, 수익 분배시 배당 간주 등 세부 규정 마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신탁이 설정된 날 설립, 신탁이 종료된 날 해산으로 간주
 -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 개정취지: 「신탁법」 상 다양한 신탁유형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체계 정비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표 40]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특례 개정내용

항 목	현 행	개 정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법인세법 제5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가 실질수익자인 경우 위탁자 과세 • 수익자 선택에 의해 법인세 과세방식이 허용되는 신탁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신탁소득 원천징수 보완 (법인세법 제7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위임 간주 • 위탁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위탁자 간 대리·위임 간주
신탁재산 법인과세 특례 (법인세법 제75조의11)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의 지위: 신탁재산의 수탁자(법인과세수탁자)는 별도 구분 • 수탁자의 납세의무: 고유소득과 분리된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부담 • 수익자의 보충적 납세의무: 신탁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수익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법인세법 제75조의1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설립 및 해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신탁이 설정된 날 해산: 신탁이 종료된 날 사업연도: 신탁재산별로 사업연도 신고 납세지: 수탁자와 납세지 동일
공동수탁자 규정 (법인세법 제75조의1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의 신탁재산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탁의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주수탁자) 이외 수탁자도 연대납부 책임 부과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법인세법 제75조의14)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분할 (법인세법 제75조의15)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의 합병·분할을 법인의 합병·분할로 간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특례 (법인세법 제75조의18)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수탁자가 금융회사인 경우를 제외) •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매도시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법인과세 수탁자

- 세수효과
 - 추정근란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특례를 선택할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추정 근란
- 주요 논의 사항
 - 최근 사회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등장한 신탁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정부안 반영
 - 도관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신탁(수익자 과세신탁)에 대해서는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가 신탁에 대해 지배권과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어 위탁자를 실질수익자로 볼 수 있는 신탁(위탁자 과세신탁)에 대해서 위탁자 과세를 인정
 - 만일, 수익자가 불특정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신탁 등 신탁재산에 1차적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인 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선택 허용)
 - 이는 소득 발생시마다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유보한 후 향후 배분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신탁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5)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요건인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는 경우 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
 - 개정취지: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
 - 시행일: 2021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21년 12월 31일

[표 4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주요 내용	현행	구자근 의원안	엄태영 의원안	윤두현 의원안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서 창업(수도권과 밀역제권역 제외)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현행)	(현행)	(현행)
세액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복귀: 5년 100%+2년 50% - 부분복귀: 5년(수도권내 부분복귀 3년) 100%+2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복귀: 6년 100%+3년 50% - 부분복귀: 6년(수도권내 부분복귀 3년) 100%+3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복귀: 6년 100%+5년 50% - 부분복귀: 6년(수도권내 부분복귀 3년) 100%+5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복귀: 10년(수도권내 5년) 100%+수도권내 한정 2년 50% - 부분복귀: 5년(수도권내 부분복귀 시 3년) 100%+5년(수도권내 2년) 50%
적용기한	2021.12.31.	2025.12.31.	2030.12.31.	2021.12.31.
주요 내용	김용판 의원안	정일영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적용대상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서 창업(수도권과밀역제권역 제외, 경제자유구역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을 국내로 복귀 또는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소분류)를 기준으로 경영하는 업종이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복귀: 5년 100% + 2년 70% + 2년 50% - 부분복귀: 5년(수도권내 부분복귀 3년) 100% + 2년 70% + 2년 50% 	(현행)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또는 복귀: 5년 100%+5년 50%
적용기한	2021.12.31.	2028.12.31.	2021.12.31.	2021.12.31.

주요 내용	조정식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적용대상	(현행)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서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시 (생산량 감축 요건 폐지)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서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시 (생산량 감축 요건 폐지)
세액감면율	- 완전복귀: 7년 100% + 3년 50% - 부분복귀: 7년(수도권내 부분복귀 5년) 100% + 3년 50%	(현행)	(현행)
적용기한	2021.12.31.	2021.12.31.	2021.12.31.

□ 최근 개정 연혁

- 2011년 동 조문 신설 후 완전복귀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국내복귀 기업에 동 제도가 적용 중
- 반면, 부분복귀는 2016년까지는 중소기업만 적용되다가 2017년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부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중
- 2020년 3월 세법개정을 통해 창업 및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을 통한 국내복귀의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복귀방법을 확대
- 세액감면 대상 복귀 지역은 2016년 이전까지는 수도권 밖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적용되다가, 2017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한 경우에만 적용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해외진출기업 중 생산량 감축 없이 국내로 복귀할 기업에 대해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정부안은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는 경우 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대다수 의원안은 감면율 상향이나 대상지역 확대 등을 제시
- 최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을 보면, 국내복귀기업 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국내복귀기업이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2014년도부터 2020년 6월까지 복귀한 74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복귀하였고,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서 전자·주얼리·자동차 등의 업종이 다수
- 조세소위 논의 결과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을 감안하여 정부안으로 합의
- 2019년 대기업 부분복귀(해외 생산량 축소) 허용, 2020년 3월 국내사업장 신설이 아닌 증설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연장 및 재설계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투자 및 임금증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포함형의 당기소득 비율 상향 조정, 임금증가 대상범위 상향, 초과환류액 이월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투자포함형 당기소득 비율 상향: 당기소득 적용 비율 60%→70%로 상향
 - 환류 대상 범위 확대: 임금증가 기준금액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개정취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투자, 고용, 상생협력으로 유출하도록 유인
- 시행일: 2021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22년 12월 31일

[표 4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정내용

	현행	개정
과세방식	A, B 중 선택 ㉠ [당기소득×65%-(투자+임금증가+상생)] ×20% ㉡ [당기소득×15%-(임금증가+상생)] ×20%	A, B중 선택 ㉠ [당기소득×70%-(투자+임금증가+상생)] ×20% ㉡ [당기소득×15%-(임금증가+상생)] ×20%
환류대상 범위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투자: (현행과 같음) 임금증가: 총급여 8,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 (현행과 같음)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1년	2년

- 최근 개정 연혁
 -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신설
 - (2017년) 배당가중치 하향(1 → 0.5) 및 임금증가 가중치 상향(1 → 1.5)
 - (2018년) 환류대상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재설계
- 세수효과
 - (2021년) 없음 (연평균) -430억원 (2021~2025년) -860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인세를 과세하더라도 투자 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지 않아 사내 유보금을 투자 및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킬 여력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기업이익의 사용처를 정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 그러나 투자 및 임금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를 재설계 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정부안에 합의
 - 환류대상범위에 총급여 수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7) 조합법인 과세특례 일몰연장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일몰기한 2년 연장
 - 개정취지: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농어업인 및 서민을 간접적으로 지원
 - 시행일: 2021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22년 12월 3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15년 누진세율 적용(과표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 2016년 조합법인 합병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2016년 중 합병법인의 경우 2년간 과표 40억원 초과시 12% 세율 적용)

□ 세수효과

-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 주요 논의 사항

- 소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해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 없음
-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매출액 1,000억원 초과하거나 자산총액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을 과세특례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어민 및 서민 지원 기능을 하는 조합법인과 일반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일몰연장만 개정

[표 43] 법인세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7조)	(적용기한) 2020.12.31.	(세액감면 대상 추가) ①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② 자동차임대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 (적용기한) 2022.12.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7조의4)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조특법 제13조의4 신설)	(신설)	(적용요건) - 벤처캐피탈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시 양도 차익 비과세 (적용기한) 2022.12.3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72조)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3조)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5조)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등 투자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제24조 신설,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폐지)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시설 등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 투자세액공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 (적용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법인 (공제율) : 일반/중견/중소기업 1%/3%/10%(기본) + 3%(추가)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3%/5%/12%(기본) + 3%(추가) (적용기한) 없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제100조의32)	(과세 방식 중 투자포함형 산식) [당기소득×65%-(투자+임금증가+상생)]×20% (환류 대상 범위 중 임금증가 부분)	(과세 방식 중 투자포함형 산식) [당기소득×70%-(투자+임금증가+상생)]×20% (환류 대상 범위 중 임금증가 부분)

주요 내용	현행	개정
	: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1년 (적용기한) 2020.12.31.	: 총급여 8,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2년 (적용기한) 2022.12.31.
기업활력 제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 제13조, 제76 조의13)	(공제기간) 10년	(공제기간) 15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 제기간 확대 등 (법인세법 제15조, 제21조, 제57조)	(공제기간) 5년	(공제기간) 10년 - 단,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허용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제144조)	(공제기간) 5~10년	(공제기간) 10년
고용지원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29조의3)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29조의3)	(공제율) - 중소/중견기업 10%/5% (사후관리 추징금액) - 세액공제액+이자상당액 (적용기한) 2020.12.31.	(공제율) - 중소/중견기업 30%/15% (사후관리 추징금액) - 세액공제액 (적용기한) 2022.12.3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제29조의4)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고용증대세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제29조의7)	(적용대상) -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시근로자	(적용대상) - 현행+고령자(60세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조특법 제30조의2)	(사후관리 추징금액) - 세액공제액+이자상당액 (적용기한) 2020.12.31.	(사후관리 추징금액) - 세액공제액 (적용기한) 2021.12.31.
과세형명 제고		
신탁재산 법인과세 개편 (법인세법 제5조, 제73조의 2 등)	(신설)	(납세의무자) - 원칙: 수익자 - 예외: 실질수익자인 위탁자 (과세방식) 선택 허용 - 신탁재산 소득 수탁자에게 과세 -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외국법인의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출의무자) -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 하는 자	(제출의무자) - 현행 - 추가: 비상장주식 상장시 상장 전 이미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자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법인세법 제92조, 제93조, 제98조)	(신설)	(과세대상) -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 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소득구분) 기타소득 (과세방법)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양도·대여·인출시: 가상자산 사업자 (원천징수 금액) - Min [양도가액×10%,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20%]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정비 (법인세법 제93조)	(신설)	- 국내원천 기타소득: 가상자산 소득 추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이전기업 재설계 및 일몰연장 (조특법 제63조, 제63조의2)	(적용대상) -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장(본사) 이전 - 법인의 수도권 밖 공장 또는 본사 이전 (적용기한) 2020.12.31.	(적용대상) - 기업의 수도권 밖 공장 이전 *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적용기한) 2022.12.31.
지방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60조, 제61조)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조특법 제104조의24)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한 경우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 (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적용대상) - 현행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 해외생산량 감축률 요건 삭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합리화 (조특법 제121조의17, 19)	(적용대상) - 사업자: 낙후지역 내/민간 - 사업시행자: 지역 무관/민간	(적용대상) - 사업자: 낙후지역 내/민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 사업시행자: 낙후지역 내/민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기타		
기부금 제도 정비 및 손금 산입한도액 계산방식 개선 (법인세법 제24조)	(손금산입한도) -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50% -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10%	(손금산입한도) - 50%한도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준 소득금액의 60% 한도)]×50% 10%한도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 ×10%
합병·분할시 기부금한도 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신설 (법인세법 제45조제6항, 제7항, 제46조의4제6항, 제7항 신설)	(신설)	- 합병법인, 분할합병 상대방법인 부분 : 합병·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 발생 소득 기준 -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승계 부분 : 승계받은 사업 발생 소득 기준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법인세법 제63조)	(면제대상)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경영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중간 예납세액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면제대상) - 현행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 학교 경영 학교법인 추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75조의7)	(가산세) - 지급금액×0.5%	(가산세) - 지급금액×0.25%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제도 신설 (법인세법 제112조의2)	(신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제도 신설 - 해당 법인은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 배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한도 계산 방식 보완 (조특법 제88조의4제13항)	(손금산입 한도) - (소득금액-이월결손금)×30%	(손금산입 한도)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 준소득금액의 60% 한도)-50% 한도 기부금}×30%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4조의26)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1.12.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 공제 규정 이관 (조특법 제104조의31)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로 이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36조)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주: ()안의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소비과세(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등)

가. 총괄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감면제도를 확대 및 연장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정부안에 합의
 -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 및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측면에서 개정이 합의되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과세기반 축소와 과세형평성 저해 발생의 우려도 제기
 - 최근 업황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가 일부 확대 또는 연장
 - 연안 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 석유류 면세 등 신설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확대안을 논의
 - 과세대상 담배에 '연초의 즐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까지 포함하기로 하였으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여 미반영
 - 쉐련 담배와의 과세형평성 및 유해성 규제 측면에서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을 제안하였으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하는 내용으로 부대의견 채택
 -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시 세액 감소액 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고가 승용차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제한
-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조정하고 주세법 체계를 정비
 - 신탁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 현행 「주세법」을 「주세법(전부개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분법함으로써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
 - (「주세법」) 세율,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 관련 규정을 구분하여 편제
 -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조·판매·유통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구분하여 편제

나. 주요 논의 사항

(1)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 → 8,000만원
 - 4,800~8,000만원 구간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주요 제도 개정은 다음과 같음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제외
 -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유지(신규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¹⁵⁾ 등 제외)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0.5% 부과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율 2%→1% 인하
 -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율을 매입액의 0.5~3%→0.5%로 일원화
- 개정취지: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표 44]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안 및 개정내용 비교

(단위: 만원)

현행	이해식 의원안	권명호 의원안	김경만 의원안	김철민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이주환·박범계 의원안	박완수 의원안	정희용 의원안	
4,800	6,000	7,000	8,000	9,000	9,500	9,600	9,800	9,900	
	이상직·전재수·민홍철·박홍근· 문진석·서영교 의원안		위성곤·이용호· 이만희·김태호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	송기현 의원안	정부안	개정
	10,000		12,000			14,000	20,000	8,000	8,000

- 주: 1. 이주환·전재수·위성곤·이해식·이만희·박홍근·문진석·서영교·김태호·권명호·박범계·김정재 의원안은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안을 포함
 2. 권명호 의원안은 간이과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방안을 포함
 3. 박홍근 의원안은 부가가치세 탈루로 처벌받을 경우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

□ 최근 개정 연혁

- 1996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설정
- 2000년 과세특례 제도의 명칭이 간이과세로 변경되었으며, 기준금액은 유지
 - * 과세특례 세액은 '매출액×일정률(2%)'
 - 간이과세 세액은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5~30%)×세액(10%)'으로 산출

15)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미용, 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 세수효과

- (2021년) -1,647억원 (연평균) -2,245억원 (2021~2025년) -11,226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1996년 이후 4,800만원으로 고정되었던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부안이 제안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관련 의원안은 21건(인상안 범위 6천만원~2억원)으로 기준금액 인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
- 오랜기간 기준금액이 유지되면서 납세협력비용 및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감 대상 사업자의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인상안에 합의
 - 정부는 향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할 계획¹⁶⁾
- 다만 심의과정에서 간이과세자가 확대될 경우 과세대상 매출·매입액의 파악이 어려워지거나 세부담 감면 측면에서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확대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2020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¹⁷⁾를 참고하여, 한시적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한 후 성과를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16) 정부,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20.7.

17)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2)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납부면제 기준금액 3,000만원 → 4,800만원
- 개정취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표 45]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안 및 개정내용 비교

(단위: 만원)

현 행	이해식 의원안	위성곤·박홍근·서영교·김정재 의원안			
3,000	4,000	4,800			
문진석·권명호·박범계 의원안		이주환·전재수 의원안	이만희 의원안	정부안	개 정
5,000		6,000	7,200	4,800	4,800

□ 최근 개정 연혁

- 2000년 소액부징수(세액 기준) 제도가 납부면제(공급대가 기준)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기준금액은 2,400만원으로 설정
- 2019년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상

□ 세수효과

- (2021년) 없음 (연평균) -467억원 (2021~2025년) -1,866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확대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완화를 위해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안에 합의
- 다만, 기준금액 인상에 있어 납부면제로 전환되는 3,000~4,800만원 구간 사업자의 매입세액 신고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2019년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2,400만원→3,000만원) 개정에 따른 효과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기준금액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

(3) 과세대상 담배의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하는 것까지 과세대상에 포함
- 개정취지: 과세 사각지대 해소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표 46]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확대

현 행	개 정
·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	·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것도 과세대상으로 추가

□ 세수효과

- (2021년) 156억원 (연평균) 170억원 (2021~2025년) 848억원

□ 중점 논의사항

-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에 대한 과세 공백을 해소하는 입법취지에 대하여 이견 없이 동의¹⁸⁾
 -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 공백은 201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의 지적사항이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과세대상 확대
- 심사과정에서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는 차후 유해성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 포함 또는 판매금지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18) - 과세대상 담배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4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49)도 제출되었으며 동일내용으로 잠정합의
 -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안, 의안번호 2101652), (김수홍 의원안, 의안번호 2101885), (정춘숙 의원안, 의안번호 2102273)은 계류

(4) 주세법 체계개편 및 제도정비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기존 「주세법」을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분법
 - * 「주세법」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만 남겨두고, 주류 행정(제조·판매·면허·유통 등)에 관한 규정은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
- 개정취지: 주류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 및 납세자 편의 증진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표 47]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체계

현행 「주세법」	개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세법, 행정, 벌칙 등 혼재	세율,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 관련 규정	제조·판매·유통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
5장 7절 57조	7장 26조	6장 4절 37조
제1장 총칙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3장 신고와 납부 제4장 결정·경정·징수·환급 제5장 면세 제6장 납세의 담보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3장 주세의 보전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승인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 최근 개정 연혁

- 1949년 주세법 제정 (종량세 체계)
- 1968년 종가세 체계로 전환
 - 세부담 형평성 제고, 주류소비 억제 및 세수증대 목적
- 2019년 탁주·맥주에 대한 종량세 체계 도입

□ 주요 논의 사항

- 분법에 대해서는 납세자 등의 이해를 제고한다는 제도정비 취지에 큰 이견 없이 개정 합의
 - 분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류산업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요청

- 이외에도 주류 면허발급 제한사유를 주류 제조 및 판매와 연관있는 법률의 위반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정비
 - 조미용 주류 비과세, 타 제조업체 시설을 이용한 위탁생산 허용,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 등 정부가 제안한 정비사안에 대해서도 이견 없이 합의

[표 48] 소비과세 분야 개정 내용

(단위: 억원)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간이과세 관련 제도 개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부가세법 제61조제1항)	4,800만원 미만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배제 대상 (부가세법 제61조제1항)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 추가 - 4,800~8,000만원 구간의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부가세법 제69조제1항)	3,0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과 (부가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발급 허용 대상 -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 허용 대상 - 간이과세자 중 4,800만원 미만 사업자·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율 조정 (부가세법 제46조제1항)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공제율 2.0% (‘21년말까지 2.6%)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공제율 1.0% (‘21년말까지 1.3%)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 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매입 세액공제 적용 (부가세법 제46조제3항)	공제대상 매출전표 발급 - 일반과세자	공제대상 매출전표 발급 - 일반과세자 - 4,800~8,000만원 구간의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율 조정 (부가세법 제63조제3항)	매입세액의 0.5~3%(업종별)	공급대가의 0.5%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부가세법 제65조제1항)	공제율 - 2/102 ~ 9/109	미적용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기간 납부세액 신고 사유 확대 (부가세법 제66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부가세법 제68조의2)	(신설) - 경정 시 가산세율(1%)	-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 그 외 가산세는 일반과세자 수준으로 적용 - 경정 시 가산세율(0.5%)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과세형명 제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개소세법 제1조제2항제6호)	과세대상: - 「담배사업법」상 담배	과세대상 추가: - 이미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한 것 - 그 밖에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별소비세법 탄력세율 적용 한도 근거조항 신설 (개소세법 제1조제7항단서)	(신설)	적용한도: 산출세액과 조정 후 산출세액 간 차액이 과세물품 당 100만원 범위 내
소비자 및 사업자 지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정사유 보완 (조특법 제105조의2)	추징대상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추징대상 조정 - 확정신고기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정비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공급하는 시설	영세율 대상 추가 -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시설
농어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조특법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111조)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제1항 제5호)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시내·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제1항 제9호의2)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제1항 제9호 의3)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11호)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제1항 제2호)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조특법 제106조의2제1항 제2호)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조특법제106조의2제1항 제1호)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조특법 제107조의2)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조특법 제107조의3)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특례 (조특법 제108조)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제109조제6항)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연안 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신설 (조특법 제111조의5)	(신설)	- 감면율 15% - (적용기한) 2022.12.31.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면세 (조특법 제111조의6)	(신설)	- 내수용 비과세물품(나프타, 항공유 등) 제조에 소요된 중간투입유 개별소비세 면세 - (적용기한) 2022.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면세 대상 주류 확대 (조특법 제115조)	(신설)	면세대상 주류 범위 확대 - 소규모 주류 제조장 및 전통주 제조장에서 판매하는 주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 받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 등 (조특법 제121조의14)	(신설)	입국장 면세점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21조의25)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1.12.31.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조특법 제126조의3)	(적용기한) 없음	(적용기한) 2021.12.31.
주류산업 규제 개선		
주세법 전부개정 /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세법과 행정규정 등 혼재	(주세법) 주세 부과 규정 (주류 면허 관리법) 주류 행정 관련 규정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세 비과세 (주세법 제2조)	(신설) *현행 주세(10%) 과세	조미용 주류 비과세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 허용 (주세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6조)	(신설)	주류 위탁제조 근거 마련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 (주류면허법 제3조)	(신설)	제조장 방문객에게 무상제공하는 주류 첨가·제조 등에 대한 허용
주류 면허발급 제한사유 완화 (주류면허법 제7조)	(면허발급 제한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	주류 관련 제조·판매업 면허 제한사유를 관련법률 위반으로 한정
조세제도의 합리화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전환 (부가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위탁자	납세의무자: 수탁자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부가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국내 공급 전자적용역은 특례 규정으로 과세	과세규정 명확화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제104조의8제5항)	(신설)	- 소득세·부가가치세 및 국세 - 공제율: 대통령령 위임
기타 제도개선사항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개별 소비세 환급특례 폐지 (개소세법 제20조의2)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	(폐지)

주: 1)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의 세수효과는 간이과세 배제 대상 신설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인하·
매입세액공제를 인하·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의 효과를 반영

1. '부가세법'은 「부가가치세법」, '개소세법'은 「개별소비세법」, '주류면허법'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5 재산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재산과세 분야)

가. 총 괄

- 재산과세 관련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회피 방지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
 -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상속세 과세의 방법 등을 명확화하였으며,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여 위탁자의 조세회피를 방지
 - 공평과세를 위해 현행 일반·성실공익법인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의 요건 합리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증권거래세율 인하,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법인 중과세율 미적용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 세부담 완화
- 과세의 명확화 및 조세회피 방지
 - 「신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견 없이 상속의 정의에 추가하는 정부안대로 개정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시 신탁재산의 징수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정부안 및 의원안을 반영하여 개정
- 공익법인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
 - 일반·성실공익법인으로 이원화되어 사후관리체계가 복잡한 현행의 공익법인 유형 구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견 없이 정부안대로 개정
 - 공익법인 일원화에 따른 공익법인의 요건 합리화 및 사후관리 합리화를 위해 정부안 및 의원안을 반영하여 개정
- 재산과세 세부담 완화
 - 주식시장 활성화 및 소액투자자 등의 세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

-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법인 증과세율 대신 개인과 동일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의원안을 반영하여 개정

나. 주요 논의 사항

(1)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의 명확화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상속의 정의에 추가하고, 수익자연속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 상속의 정의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추가하고 수유자(受遺者)의 정의에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해 신탁의 수익원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는 반면 증여의 정의에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제외
 -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수익자(제1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제2수익자)이 새로이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제2수익자)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수익자(제1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
- 개정취지: 새로운 형태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의 명확화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 주요 논의 사항

- 2011년 「신탁법」 개정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이 신설 명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신탁법의 개정사항에 대해 상속세 과세여부에 대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 그리고 최근 안전한 상속을 위해 자산가들의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

(2)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현행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 개정취지: 신탁재산을 이용한 종합부동산세 조세회피 행위 차단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는 현행 수탁자로, 위탁자는 신탁을 통해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합산과세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세회피가 가능
 - 개정안은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함으로써 신탁재산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신탁재산 관련하여 세금체납시 강제징수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

[표 49]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관련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납세의무자		수탁자	위탁자
위탁자 세금체납 처분	징수근거 마련	수탁자에 대한 체납처분만 존재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 부담 신탁재산에 대한 징수 가능
	절차규정	(신설)	수탁자에 물적납세의무 이행시 납부고지 등 절차규정

-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최근 개정연혁

- 2014년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 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아닌 타법개정(「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납세의무자 변경

□ 세수효과

- (2021년) 335억원 (연평균) 516억원 (2021~2025년) 2,582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신탁행위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조세회피 차단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
- 다만,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간 납세의무자 불일치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소관부처(행정안전부)의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또한, 신탁재산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금지 조항과의 충돌 우려
 - 신탁재산 관련 체납처분 특례를 신설한다해도, 신탁재산에 대한 국세 등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신탁법」 제22조와의 충돌로 실효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이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한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와 동일하여 실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 제기

(3)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 합리화
 -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하여 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개선

[표 5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 면제 한도

현행		개정	
구분	한도	구분	한도
성실공익법인	10%	공익법인	10%
의결권 불행사 및 자선·장학·사회복지사업 성실공익법인	20%	의결권 불행사 및 자선·장학·사회복지사업 공익법인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성실공익법인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	5%
기타 일반 공익법인	5%		

-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의 단순협력의무 관련 요건(1.외부회계감사 의무, 2.전용계좌 개설·사용, 3.결산서류 공시, 4.장부작성 및 비치 요건)은 사후관리 의무로 전환하되, 공익지출 강화를 위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추가
- 운용소득의 고유목적 의무사용 비율 70%→80%로 상향조정하고, 사후관리 확인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5년마다 과세관청이 확인하던 것을 매년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
-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 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 개정취지: 공익법인 유형 개선 및 사후관리 합리화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최근 개정 연혁

[표 51] 최근 개정 연혁

연도	개정내용	개정조항
2012	성실공익법인 관련 제도정비 -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장부작성보관의무 등 추가) -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상증법 제16조 상증령 제13조
2015	공익법인 사후관리 제도정비 - 공익법인 이사 구성요건 위반에 대한 보완기간 도입	상증법 제48조 상증령 제13조
2016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 -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보완	상증법 제50조의4 상증법 제16조, 제48조
2018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범위 명확화 - 공시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보완	상증법 제48조, 제50조의3 상증법 부칙 제13조
2019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및 공익법인 정보공개 의무강화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 의무공시 및 외부회계감사대상 공익법인 확대	법인령 제39조 상증법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3 상증령 제38조, 제43조, 제43조의3

주: '상증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인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의미

□ 주요 논의 사항

- 공익법인 과세체계의 합리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으로 이견 없음
- 다만, 공익목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용소득의 80% 이상 사용 기준을 상향하자는 의견 제기

(4) 증권거래세율 인하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거래대금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의 거래대금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45%에서 단계적으로 0.35%로 인하

[표 52] 증권거래세율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2021		2023	
			인하폭		인하폭
법정세율 (비상장 및 장외거래 주식)	0.45%	0.43%	-0.02%p	0.35%	-0.08%p

주: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상장주식은 시행령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며, 법정세율과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0.7.)

- 개정취지: 세부담 경감을 통한 소액투자자 지원과 증권거래 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활성화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19년 법정세율 및 탄력세율을 0.05%p 세율 인하
 - 법정세율: 0.5% → 0.45%
 - 탄력세율: (코스피·코넥스) 0.15% → 0.10%, (코스닥) 0.30% → 0.25%

□ 세수효과

- (2021년) -124억원 (연평균) -469억원 (2021~2025년) -2,343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 증권거래세 인하의 전제가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라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존재

[표 53] 재산과세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과세 명확화 및 조세회피 방지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의 명확화 (상증법 제2조 및 제9조)	(신설)	유연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해 과세대상 규정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등 (종부세법 제7조 등)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수탁자 (신설) - (신설)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위탁자 -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체납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부담 -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체납시 처분에 대한 절차규정 신설
공익법인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일원화 (상증법 제16조제2항)	공익법인 과세체계를 일반공익 법인과 성실공익법인 이원화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으로 이원화된 과세체계를 일원화
공익법인 유형 일원화에 따른 공익법인 요건의 합리화 및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상증법 제48조)	-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출연재산 가액에 대한 사용의무 없음 - 외부회계감사업무 등 단순협력 의무의 성격인 의무 존재	- 주식 5%초과보유 가능한 공익 법인요건에 출연재산가액 1% 이상 사용의무 - 단순협력의무요건은 사후관리 의무로 전환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관한 사후관리 합리화 (상증법 제48조제2항)	출연재산을 3년이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을 3년이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공익법인 사후관리 신고제 전환 (상증법 제48조제13항)	(신설) * 성실공익법인 사후관리: 5년주기 확인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여부를 매년 신고하고, 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재산과세 세부담 완화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거래대금의 0.45%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거래대금에 적용 ※ 상장주식 거래대금에는 시행령의 탄력세율 적용	세율의 단계적 인하 - '21년: 0.43%(-0.02%p) - '23년: 0.35%(-0.08%p)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신고 허용 (종부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에 포함 납세자가 유리한 제도 선택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명시 (중부세법 제9조)	공공주택사업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체계 적용 기본공제배제, 초과세율적용, 비례세율체계 ※ 1주택 3%/다주택 6%	공공주택사업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의 세율체계 적용 기본공제 6억원/9억원 세율 0.6~3.0%/1.2~6.0%, 초과누진세율체계
기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상증법 제19조제2항)	6개월	9개월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상증법 제41조의2)	초과배당 증여이익: - 초과배당 소득세 상당액과 증여 산출세액 비교하여 큰 금액과의 차액	초과배당 증여이익: -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등에 대한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 추가 (상증법 제82조)	(신설)	제출의무자에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명의개서 변경취급자 추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종목 시행령 위임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파생상품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020.12.31.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 시행령 위임 적용기한: 2022.12.31. (시행일: 2021.4.1.)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71조)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17조제1항제1호등)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 (상증법 제60조제1항)	(신설)	상증세가 부과되는 가산자산에 대한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에 가상자산 추가

주: '상증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부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의미

2020년 8월 통과된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의 원안으로 발의되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소득세법) 다주택자 및 단기보유 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현행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을 보유기간 과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 보유기간에 따라 12~40%, 거주기간에 따라 8~40%를 각각 공제
 -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 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 40% → 70%, (1년 이상~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 다주택자 2주택(3주택 이상): 기본세율 + 10%p(20%p) → + 20%p(30%p)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보유수 계산 시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포함
 - * 세율인상은 2020.6.1.부터 시행, 그 외 개정 사항은 2020.1.1.부터 시행
-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기본세율 + 10%p → + 20%p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20%의 추가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법인·다주택자 등의 주택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개인 및 법인에 적용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개인: 2주택 이하 0.5~2.7% → 0.6~3.0% / 3주택 이상 0.6~3.2% → 1.2~6.0%
 - *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 2주택 이상
 - 법인: 2주택 이하 3.0% / 3주택 이상 6.0% 비례세율로 적용하고, 과세기준액 공제(1세대 1주택 9억원, 그 외 6억원) 및 세부담 상한제 미적용
 -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인상 등
 - 고령자 세액공제율: 10~30% → 20~40%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율의 중복적용을 70% → 80%까지 허용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비율 인상: 200% → 300%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변화

과세대상		보유기간	개정 전 (2021.5.31.까지 적용)	개정 후 (2021.6.1. 이후 적용)
단기보유	주택 및 조합입주권	1년 미만	40%	7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	60%
		2년 이상	기본세율	(좌동)
	주택 외 부동산	1년 미만	50%	(좌동)
		1년 이상 2년 미만	40%	(좌동)
		2년 이상	기본세율	(좌동)
분양권 ¹⁾	1년 미만	조정대상지역 50%	70%	
	1년 이상 2년 미만	기타지역 기본세율	60%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 30%p

주: 1) 현행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 세율 (6~42%)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¹⁾]

개정 전 (20.12.31.까지 적용)		개정 후 (21.1.1. 이후 적용)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4년	24%	3~4년	12%	2~3년 (3년 이상 보유 한정)	8%
				3~4년	12%
4~5년	32%	4~5년	16%	4~5년	16%
5~6년	40%	5~6년	20%	5~6년	20%
6~7년	48%	6~7년	24%	6~7년	24%
7~8년	56%	7~8년	28%	7~8년	28%
8~9년	64%	8~9년	32%	8~9년	32%
9~10년	72%	9~10년	36%	9~10년	36%
10년 이상	80%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주: 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변화: 개인]

(단위: %)

과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개정전 (‘20.12.31.까지)	개정후 (‘21.1.1.이후)	개정전 (‘20.12.31.까지)	개정후 (‘21.1.1.이후)
3억원 이하	0.5	0.6	0.6	1.2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주: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인 2주택 이하 3.0%, 3주택 이상 6.0%의 세율이 비례세율로서 적용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변화]

(단위: %)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개정전·후	중복적용	
	개정전 (‘20.12.31.까지)	개정후 (‘21.1.1.이후)			개정전 (‘20.12.31.까지)	개정후 (‘21.1.1.이후)
60~65세	10	20	5~10년	20	70	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주: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율은 개정전 최대 70%에서 개정후 최대 80%까지 중복적용이 가능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 변화]

(단위: %)

	세부담 상한 비율	
	개정전 (‘20.12.31.까지)	개정후 (‘21.1.1.이후)
2주택 이하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150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6 기타(관세법, 국제조세)

가. 총괄

- (관세 분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면을 규정한 의원안 2건(고용진·추경호의원안) 반영
 - 이 외에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관세행정 합리화를 위한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
- (국제조세 분야) 제도합리화를 위한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 확대 및 중재제도의 세법상 근거 규정 마련 등 이견 없이 정부안 대부분 반영
 - 이 외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확대(자산의 매각손익) 적용 및 가산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에 따른 편제 개편 및 상향입법 등을 포함하는 정부안 반영

나. 주요 논의 사항

(1)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감면 규정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
 - 개정취지: 코로나 19로 인해 국외 입출국이 크게 제한됨에 따른 면세점 산업의 피해를 경감
- 중점 논의사항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어 매출액이 감소하면 특허수수료가 감소하므로 추가적인 감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
 - 그러나, 코로나 19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위원회 대안에 반영

(2) 중재제도의 세법상 근거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중재의 개시요건 등을 규정
 - 개시요건: 상호합의 개시일 이후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
 - 시행요건: 신청 대상·시기, 신청대상 과세처분 범위, 중재인 구성, 의사결정 방법, 중재 결정의 효력 등을 조세조약 제약상대국과 합의(조세조약 제·개정 사항)
- 개정취지: 의무적 합의도출이 필요 없는 상호합의절차의 분쟁해결에 대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
- 최근 중재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 더불어 납세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견 없이 정부안 반영

[표 54] 기타 국제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관세법」		
원산지 확인 요청 관련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의 조정 (관세법 제21조제2항)	원산지 확인요청 관련 관세 부과 제척기간 특례: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회신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원산지 확인요청 관련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회신 받은 날과 회신 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압류·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법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 마련 (관세법 제43조의2)	(신설)	관세청장은 체납처분 유예 신청자의 범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재수출감면대상 확대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 대상: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추가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관세법 제127조)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출항시 적재물품 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관세법 제136조제3항 단서)	(신설)	택송품 운송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물품의 목록은 세관장이 해당 택송품 운송업자에게 제출 요구 가능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 (관세법 제140조제7항)	(신설)	세관장은 하역 장소 및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 명령 가능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 신설 (관세법 제165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75조의4)	(신설)	- 보세사 명의대여 등 알선 금지 -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관련 결격사유 강화 (관세법 제175조제6호 및 제7호)	특허보세구역 결격사유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등 위반 후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를 결격사유에 추가
재난으로 인한 영업 피해 시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감경 규정 신설 (관세법 제176조의2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음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 확대 (관세법 제222조제3항)	보세운송업자등의 세관장 보고 사항: 업무실적, 등록 사항 변경 등 영업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추가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신설 (관세법 제237조제5호)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 통관보류 할 수 있음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경우에도 수입물품 통관보류 할 수 있음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7호)	(신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관세법 제322조의2)	(신설)	-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음 - 그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할 수 있음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관세법 별표)	-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8%	- 관세율 인하: 3%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 확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신설)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제3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포함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소급적용기간 확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승인 대상기간 직전 5년 이내 - 일방적 사전승인: 승인 대상기간 직전 3년 이내	-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승인 대상기간 직전 7년 이내 - 일방적 사전승인: 승인 대상기간 직전 6년 이내
국제거래명세서 등 자료제출 신고의무 기한 연장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득세 및 법인세 확정신고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정상가격 사전승인 방법 등의 상향입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의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의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8항, 제11조의2 제6항 및 제12조제1항 -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상향입법) -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의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의무: 동법 제15조제2항 -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동법 제15조제3항·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 이자의 손급불산입 제도 단순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해당 사업연도에 이자비용 손급불산입 - 세무조정	-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익금산입 - 세무조정 삭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확대 적용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신설)	유보소득 배당간주 소득에 자산의 매각손익 추가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규정 정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설)	재해손실공제와 증여세 과세표준을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규정으로 추가
상호합의절차 개시의무 발생범위 확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신설)	상호합의의 개시의무 발생범위에 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상호합의 이행 간 충돌방지 규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신설)	상호합의절차 상 납세자가 상호합의를 수락하고, 불복쟁송을 취하 하는 경우 합의를 이행하는 요건을 신설
중재제도의 세법상 근거신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신설)	중재의 개시요건 등 규정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에 가상자산 관련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와 해외금융회사에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해외금융계좌 소명요구 기관 확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소명요구 기관 - 관할 세무서장	해외금융계좌 소명요구 기관 - 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조세조약의 시행 삭제	조세조약의 시행(제33조) - 조세조약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삭제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 의무 및 기간 연장 등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소득세 및 법인세 확정신고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해외현지법인 등에 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 이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등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에 규정	자료제출의무 위반 등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규정을 동법으로 이관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에 따른 편제 개편 및 상향 입법	8장 49조 편제	5장, 8절, 4관, 63조로 편제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반영된 사항

-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반영된 안건은 총 35건
 - * 의원안과 정부안이 동일한 사항을 제안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는 Ⅲ-2 참조
 - 국세기본법 4건, 소득세법 5건, 조세특례제한법 11건 등(부록 표 참조)
 - 가산세 규정 정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제도 등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강화하는 개정사항이 포함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연장,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등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사항이 반영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특정 사회기반시설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등도 반영

가. 국세기본법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규정 신설(기동민 의원안)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지연기한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가산세율을 차등하여 부과되 인상 세율 수정하여 의원안의 취지를 반영
-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박홍근 의원안)
 -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
- 경정 등의 청구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통지(김수홍 의원안)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가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지연 등의 문제로 2개월 이내에 통지가 곤란할 경우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불복절차의 지연으로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여 반영
- 법률용어 정비(고용진 의원안)
 - ‘제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

나. 소득세법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조경태·김경협 의원안)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조경태 의원안: 현행의 10% 수준, 김경협 의원안: 40% 수준)하고,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기납부시 환급)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가산세율을 현행의 50% 수준(미제출시 0.25%, 지연제출시 0.125%)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반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김주영 의원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5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반영

다. 법인세법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제도 신설(김수홍 의원안)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기부금영수증 보관의무,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을 면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로 수정하여 반영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하향 조정 등(김경협 의원안)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현행 지급금액의 0.5%에서 0.2%로 인하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가산세율을 0.25%p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 일정비율 상향 입법 및 지출 의무 강화(윤후덕 의원안)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에 지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 수익용 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의무지출비율을 1%에서 2%로 상향하려는 것인데,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부분만 수정반영

마. 종합부동산세법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대우(윤희숙 의원안)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및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인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액 및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만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하여 반영
- 법인 보유 공공임대주택, 일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종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박형수 의원안)
 -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인 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 해당 주택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때까지 현행 법인 종과세율이 아닌 종전 세법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인데,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 법인 종과세율을 배제하고 개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수정하여 반영

바. 주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주류 행정에 관한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법(고용진 의원안)
 - 현행 「주세법」 중 주류 행정에 관한 규정을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 「주세법」에서는 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편제는 원안을 반영하되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주세법」에 규정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
- 주류 면허발급 제한사유 완화(김수홍 의원안)
 - 모든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규정되어 있던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제한사유를 「조세범 처벌법」,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제한 법률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청소년보호법」을 추가하고 조항 단위까지 규정하여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여 반영

사. 국세징수법

- 법률용어 정비(고용진 의원안)
 -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

아. 관세사법

-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최인호 의원안)
 -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

자. 관세법

-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에 업무종사자의 인적사항 포함(조정식 의원안)
 -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에 업무종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
-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신설(홍익표·조해진 의원안)
 -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감면 규정 신설(고용진·추경호 의원안)
 -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각종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감경요건으로 채택하여 반영

차.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사회기반시설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이광재·박홍근 의원안)

- 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특정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저율 분리과세(세율 9%)하는 박홍근 의원안을 채택하여 반영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기간 연장 등(이명수·전용기·추경호·윤후덕 의원안)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기간(현행: '20.1.1.부터 '20.6.30.까지)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연장하고,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윤후덕 의원안을 채택하여 반영
-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가입연령요건 조정(김경협 의원안)
 -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적용대상 연령요건을 가입 당시 '19세 이상'(현행 '2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반영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김경만 의원안)
 -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하는 제도를 2020년 6월 30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연장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
-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정성호 의원안)
 -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경우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일정 금액(대통령령 위임)을 공제하는 내용의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시행시기를 2021년 7월 1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조건부 면세(추경호·고용진 의원안)
 - 내수용 비과세 석유제품의 원료로 투입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면제되도록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한시적인 지원을 위하여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제조항 신설

[표 55]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대안반영

안 건	제안내용(개정안)	개 정
「국세기본법」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 (기동민 의원안)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적용 - 3개월 이내 납부: 50% - 3~6개월 이내 납부: 30% - 6개월~1년 이내 납부: 20%	(수정반영)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적용 - 3개월 이내 납부: 100% - 3~6개월 이내 납부: 200% - 6개월 초과: 300%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박홍근 의원안)	간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 폐지	(원안반영)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김수흥 의원안)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통지	(수정반영)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및 불복 절차 안내 통지
법률용어 정비 (고용진 의원안)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	(원안반영)
「소득세법」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조경태·김경협 의원안)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율 인하: - 조경태 의원안: 0.05%/0.025% - 김경협 의원안: 0.2%/0.1%	(수정반영)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시: 0.25% - 지연제출시: 0.12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김주영 의원안)	5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	(수정반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양도소득세 과세 등 (이상직 의원안)	집합투자증권의 양도를 분배·환매·상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수정반영) 집합투자지구로부터의 분배 등의 이익 중 소득의 구분 고려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
주식·채무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등 (유동수 의원안)	주식등의 기준시가: 주식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수정반영) 주식등의 기준시가: 주식등의 종류, 상장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안 건	제안내용(개정안)	개 정
「법인세법」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제도 신설 (김수흥 의원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하여 발급 명세 보관 및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	(수정반영) 2021년 7월 1일 이후 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하향조정 (김경협 의원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5%에서 0.2%로 0.3%p 인하	(수정반영) 가산세율을 0.25%로 수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 일정 비율 상향입법 (윤후덕 의원안)	동법 시행령 제38조제20항에 규정 상향입법: 출연재산가액에 2% (10% 초과보유시 3%)	(수정반영) 동법 시행령 제38조제20항에 규정 상향입법: 출연재산가액에 1% (10% 초과보유시 3%)
「종합부동산세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 대우 허용 (윤희숙 의원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 공제액 및 세액공제율을 적용 하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으로 상향	(수정반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 공제액 및 세액공제율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조항 신설
법인 보유 공공임대주택, 일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종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 (박형수 의원안)	면적 149㎡ 이하의 공공임대 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2020년 8월 세법개정 이전 세 율을 적용 - (현행) 1~2주택보유 3%, 3주택 이상 보유 6% - (개정안) 1~2주택 0.5~2.7%, 3주택 이상 0.6~3.2%	(수정반영)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주택 사업자 등은 법인 종과세율 대신 개인과 동일한 세율 적용 - (현행) 1~2주택보유 3%, 3주택 이상 보유 6% - (개정) 1~2주택 0.6~3.0%, 3주택 이상 1.2~6.0%
「주세법」		
「주세법」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진 의원안)	기존 「주세법」을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분법	(수정반영)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주세법」에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 수정

안 건	제안내용(개정안)	개 정
주류 면허발급 제한사유 완화 (김수흥 의원안)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제한 사유를 「조세범 처벌법」, 「식품 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축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을 추가
「국세징수법」		
법률용어 정비 (고용진 의원안)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	(원안반영)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사회기반시설에 집합투자 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특례 신설 (박홍근 의원안)	투자금액 2억원 한도 9% 분리과세	(원안반영)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윤후덕 의원안)	(적용기한): 2021.6.30.	(원안반영)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의 연령요건 조정 (김경협 의원안)	대상소득: 가입 당시 19세 이상 인 조합원·회원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	(원안반영)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김경만 의원안)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를 손금 산입하는 제도를 2020년 6월 30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연장	(수정반영) 일몰기한을 1년만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로 수정
전자송달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정성호 의원안)	전자송달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경우 국세의 납부 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공포 후 2개월 후 시행	(수정반영) 대상을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 부과하는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 부가 결정하는 국세로 한정 하고, 시행시기를 2021년 7월 1일 로 설정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 석유 류에 대한 조건부 면세 (추경호·고용진 의원안)	내수용 비과세 석유제품의 원료 로 투입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면제	(수정 반영) 적용기한: 2022.12.31.

2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사항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16개의 주요사항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

가. 소득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1년 10월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하고자 하는 정부안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 비거주자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소득을 포함하고, 해당소득의 계산방법을 규율하고자 하는 정부안에 대해,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에 맞추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

나. 법인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등의 판단시점을 대여시점으로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안에서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안에 추가하여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근거를 포함

다.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의 전환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환하되, 개정 내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계의 준비 및 납세자의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시행시기를 당초 정부안의 2021년 7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유예하도록 수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관세 포탈죄 등으로 고발되는 경우 등에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미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 이와 연계되어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 관리를 강화하고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한 정부의 관세법 개정안도 미반영

라. 개별소비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현행 유지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1㎖당 740원으로 인상하려는 정부안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은 1㎖당 370원을 유지

마. 조세특례제한법 중 주요 수정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년 앞당겨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도록 제안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기한을 앞당기고 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수정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대규모 조합법인(매출액 1,0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초과)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안에 대해 경제적 약자인 농민 및 서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 영세한 협동조합 통합정책 추진 등을 감안하여 과세특례 대상은 현행 유지하고 적용기한 연장만 반영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안에 추가하여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중소/중견기업 10%/5%에서 30%/15%로 3배 상향하는 내용 포함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사항 미반영
 - 정부안은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재설계하면서, 감면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감면한도 신설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미반영
- 특정내국법인(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사항 미반영
 - 개인유사법인 등 특정내국법인의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려는 정부안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사항 미반영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2년의 일몰 기한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은 확대하되 일몰은 현행과 같이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신설에 대해 대상 확대
 -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을 전환한 선박에 한하여 유류세를 감면하는 정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기존 선박과의 형평성 및 부정유통 유인차단을 고려하여 전체 경유선박으로 감면대상을 확대

[표 56]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 내용

안 건	정부 세법개정안	개 정
「국세기본법」		
소득세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조정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제90조)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위반시 제재 - (비밀유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과세정보 보호 조치)자료 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보호조치 요청 가능 - (과태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위반시 제재 - (비밀유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과세정보 보호 조치) 삭제 - (과태료) 삭제
중장기 조세정책운영계획 수립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 중장기 조세정책운영계획 수립 주기 변경 : 1년 → 5년 - 중장기 점검·평가보고서 신설	- 중장기 조세정책운영계획 수립 주기 현행 유지 : 1년 - (삭제)
「소득세법」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제21조)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소득, 대여소득 - 과세방식: 기타소득 (분리과세) - (시행일) 2021.10.1.	- (시행일) 2022.1.1.
가상자산 양도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56조)	- 비거주자 원천징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여 - 원천징수금액(필요경비 확인 가능한 경우): min(지급금액의 10%, 가상자산과세표준의 20%) - (시행일) 2021.10.1.	- (시행일) 2022.1.1.
「법인세법」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법인세법 제19조의2)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법률에 규정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법인세법 제92조, 제93조, 제98조)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근거 신설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근거 추가

안 건	정부 세법개정안	개 정
「부가가치세법」		
신택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의 전환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	신택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환 (시행) 2021.7.1.	(좌 동) (시행) 2022.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유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제4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 확대 -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 부당한 과소신고 등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원칙적 발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유지 - 수입자의 착오·경미한사유, 수입자가 귀책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현행 유지 (개별소비세법 별표)	니코틴 용액 1㎖당 740원	현행 유지 (니코틴 용액 1㎖당 340원)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축소 (조특법 제97조의3)	- 등록기한: 2020.12.31.	- 등록기한: 매입임대주택: 2020.12.31. 건설임대주택: 2022.12.31.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규모 조합법인 적용 배제 (조특법 제72조)	- 대규모조합법인(매출액 1,0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초과)은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 2022.12.31.	- 모든 과세특례 적용 - (적용기한) 2022.12.31.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조특법 제63조, 제63조의2)	- 감면한도{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근로자·서비스업 2,000만원)}를 신설 - (적용기한) 2022.12.31.	- 감면한도 신설 삭제 - (적용기한) 2022.12.31.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지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29조의3)	- (적용기한) 2022.12.31.	-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5%에서 30%/15%로 상향 - (적용기한) 2022.12.3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법 제104조의8)	- 대상 추가: 양도소득세 - 적용기한 신설: 2022.12.31.	- 대상 추가: 양도소득세 - 적용기한 미신설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 배당 간주 신설 (조특법 제104조의33)	- 과세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 -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 과세	(삭제)

안 건	정부 세법개정안	개 정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신설 (조특법 제111조의5)	감면대상: 유종을 전환한 선박 (중유→경유)	감면대상: 모든 경유선박

주: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3 2020년 제21대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 현황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법률안 회부 현황
 -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동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조세분야 법률안은 총 375건¹⁹⁾
 - 조세특례제한법이 175건으로 제일 많으며, 소득세법 40건, 부가가치세법 32건, 법인세법 19건, 종합부동산세 19건 등
 - 의원발의 법률안: 359건, 정부제출 법률안: 16건

[표 57]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회부현황

(단위: 건)

국세 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 세법	부가 가치세법	개별 소비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기 타	합 계
16	40	19	18	19	32	12	175	44	375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법률안 심사현황
 -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조세분야 법률안 375건중 293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된 뒤 조세소위에 회부
 - 7월 28일 상정된 3건의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입법으로서 소위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가결
 - 11월 6일 상정된 293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에 회부
 - 고용진익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0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전체회의의 대체토론 없이 조세소위로 직접 회부되어 논의
 - 조세소위에 회부하여 논의한 법률안은 228건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375건의 법률안 중 76.8% 수준

19) 이하 11월 30일까지 회부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작성함

[표 58]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법률안 상정현황

(단위: 건)

7.28. 전체회의 상정	11.6. 전체회의 상정	11.30.까지 미상정		철 회	합 계	
		전체회의 계류	조세소위 직접회부		(조세소위 상정)	
3	293	47	30	2	375	(228)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법률안 처리 현황

-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 의결하여 처리한 세법개정안은 총 139건이며, 정부안은 15건이고 의원안은 113건이며, 위원회안(대안)은 11건²⁰⁾
 -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 375건 중 34.1%인 128건이 의결
 - 조세소위에 회부되어 논의된 228건중 54.8%인 125건이 의결
-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 중 4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4건은 수정가결, 120건은 대안반영폐기

[표 59] 국회 세법개정안 처리내용, 가결방법별 정리

(단위: 건)

	처리건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합 계	139	15	4	120
의원안	113	2	2	109
정부안	15	2	2	11
위원회안(대안)	11	11		

20)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3건의 법률안을 포함되었으며, 이 법률안은 조세소위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2020년 7월 의결되었음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IV

향후 논의 과제

1 부대의견 채택 안건

□ 「소득세법」 1건

- 신탁세제 개편으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 설정 단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과 관련하여 수익권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이 미래에 발생하는 점, 신탁사업의 활성화 저해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수탁자과세신탁(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정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성과 수탁자 과세 신탁 활성화와 함께 감안하여 수탁자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늦추는 것을 증장기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및 신탁 설정시 신탁 재산에 대한 원칙적 비과세(정부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건

- 기업상속공제 확대 및 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의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고용에 유인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 정기 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관련 안건) 기업상속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완화 및 사회관리 의무 완화 등(홍석준 의원안, 이영 의원안, 김용판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등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권성동 의원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인하안(권성동 의원안),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안(권성동 의원안)

□ 「종합부동산세법」 1건

-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의결
-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향후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을 9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관련 안건) 법인보유 공공임대주택, 일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종전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박형수 의원안)

□ 「개별소비세법」 1건

- 미반영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안(㎖당 370원→740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율조정에 대해서 위해성 및 흡입량 등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복수의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율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관련 안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정부안)

□ 「증권거래세법」 1건

- 2023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0.1%p 인하하게 하는 금융상품 과세체계 도입
-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유지 필요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유동수 의원안, 정부안)

□ 「조세특례제한법」 4건

- 공적 마스크 판매 수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취지의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하였고, ‘정부는 코로나19등 국가적 재난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분야에 대해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신설(박홍근 의원안, 서정숙 의원안)
-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하였고, ‘정부는 관계부처, 업계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투자의 범위를 수도권과밀역제권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추경호 의원안)
- 영상콘텐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하였고,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 Service)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이상현 의원안, 배현진 의원안, 윤후덕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 면세사업자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부담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못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와의 과세상 차별을 조정하자는 취지의 의안이 발의되었으나 금융회사 간 과세 불형평 등 부작용 우려로 의결되지 못함
 -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지주회사의 명칭사용용역과 관련하여 '연결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추경호 의원안)

[표 60] 부대의견 채택 안건

법률명	안건(제안자)	심사결과	부대의견
「소득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및 신탁 설정시 신탁재산에 대한 원칙적 비과세(정부안)	정부안 채택 (21년 0후 시행)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수탁자과세신탁(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정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필요성과 수탁자 과세신탁 활성화와 함께 감안하여 수탁자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늦추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것
「상속 증여세법」	기업상속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완화 및 사회관리 의무 완화 등(홍석준·이영·김용판·권성동 의원안),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등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권성동 의원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인하(권성동 의원안),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권성동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고용에 유인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 정기 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종합부동산세법」	법인보유 공공임대주택, 일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종전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박형수 의원안)	대안 채택 (21년 0후 시행)	기획재정부는 향후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을 9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법률명	안건(제안자)	심사결과	부대의견
「개별 소비세법」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정부안)	(미반영)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율 조정에 대해서 위해성 및 흡입량 등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복수의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율 조정안을 마련할 것
「증권 거래세법」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유동수 의원안, 정부안)	정부안 채택 (21년 0후 시행)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유지 필요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조세특례 제한법」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신설(박홍근·서정숙 의원안)	(미반영)	정부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문에 대해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추경호 의원안)	(미반영)	정부는 관계부처, 업계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투자의 범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것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이상헌·배현진·윤후덕·추경호 의원안)	(미반영)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 Service)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추경호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금융지주회사의 명칭사용용역과 관련하여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도입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2 미반영 쟁점 안건

-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음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기업상속공제 적용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인상 등은 2020년 개정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제기

[표 61] 미반영 쟁점 안건

주요 내용	찬성측 의견	반대측 의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 (유경준 의원안)	매물잠김 현상 해소 필요, 보유세 강화한 만큼 거래세는 인하될 필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시장에 혼선 야기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박홍근·서정숙 의원안)	감염병예방을 위한 민간부문의 협조에 보상 필요	여러 민간부문의 협조가 있었으며, 일정 직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정부안)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간 형평성 제고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 기업의 자본축적 저해와 같이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 등 발생
법인세율 인하 (류성걸·송언석·구자근·추경호 의원안)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및 세수증가라는 선순환 효과 유도 필요	법인세율이 투자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는 세수손실만 초래
기업상속공제 적용완화 (홍석준·이영·김용판·권성동 의원안)	중견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승계 지원 필요	지속적으로 기업상속공제가 확대되어왔으며, 이를 상속세율 인하 수단으로 활용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권성동 의원안)	해외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부담이 크고, 높은 상속세율 유지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세금 없는 대물림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상속세율 인하 논의는 시기 상조

주요 내용	찬성측 의견	반대측 의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정부안)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의 효과 기대	성실신고 유도 역할의 축소 및 국내산 재화와의 과세 형평성 저해 우려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 세율 상향 (정부안)	다른 담배제품에 비해 세부담이 낮아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세율인상 필요	-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및 흡연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필요 - 과세대상 확대와 더불어 급 격한 세부담 인상 우려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폐지안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제도 폐지 및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최대 30%)
- 개정취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

[표 62]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조정안

현행 (2021.5.31. 까지)	현행 (2021.6.1. 이후)	유경준 의원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증가 - (2주택) 기본세율(6~42%)+ 10%p - (3주택) 기본세율(6~42%)+ 20%p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증가 - (2주택) 기본세율(6~42%)+ 20%p - (3주택) 기본세율(6~42%)+ 30%p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증가 - 증가 폐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장기 보유특별공제율 - 적용 불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장기 보유특별공제율 - 적용 불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장기 보유특별공제율 - 적용 허용

□ 최근 개정연혁

- 2018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가 신설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배제
 - 양도소득세율: (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 기본세율+20%p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30%) 적용 불가

- 2020년²¹⁾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증과세율 10%p 인상 등
 - (2021년 1월 시행)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하여 최대 80%의 공제율 적용(현행 보유기간별 최대 80%)
 - (2021년 6월 시행) 양도소득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기본세율 +30%p,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향후 조정대상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 건수의 합리적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보유·매매가 모두 어려운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보유세를 인상한 만큼 거래세를 낮추거나, 매물잠김 현상 등을 감안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인상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2020년 8월 부동산세제 개편안²²⁾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시장에 혼선 야기, 매물잠김 현상은 향후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미반영
- 다만, 내년 1~5월까지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한 후에 성과가 없으면 정책 방향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제안

(2)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개정취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기여한 약국개설자의 세부담 완화

21) 2020년 8월 개정

22) 2020년 8월 4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및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통과되었다.

[표 63]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박흥근 의원안	서정숙 의원안
대상자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개설자	
감면내용	약국 소득세액에 전체 매출액 대비 공적마스크 매출액 비율을 곱한 세액 상당액 감면	공적마스크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2020.12.31.	2021.6.31.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개설자의 매출액 및 공적마스크 매출액 자료 부재

□ 주요 논의 사항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간부문의 협조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
- 다만, 약국은 공적마스크 판매를 통해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받았으며, 약국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부문의 협조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일정 직역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미반영
- 대신, '정부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문에 대해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3)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하며, 이와 관련한 배당의 귀속 및 지급시기, 소득세 원천징수, 중복과세 조정 등 사항 규정
 - 특정내국법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 초과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과오납환급금, 세금 등을 반영한 유보소득에서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자기자본의 10% 또는 유보소득과 실제 배당액의 합산금액의 50% 중 큰 값으로 규정

- 개정취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시행일: 2021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표 64]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안

개 정	
과세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 단,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 규정
과세방식	초과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 과세 - 주주별 배당간주금액=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유보소득) × 지분비율 * 유보소득= 당해연도 소득+(과오납환금 등) - (세금 등) 적정유보소득= max{배당가능소득 × 50%, 자기자본 × 10%} 단, 유보소득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 세액= 주주별 배당간주금액 × 14%(원천징수세율) * 주주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율(6~42%) 적용
간주배당 귀속 및 지급시기	(귀속시기)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지급시기) 법인세 신고기한
소득세 원천징수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기타	실제 배당이 이루어진 배당 간주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세수효과

- 추정근란
 - 과세요건(과세대상 등)의 시행령 위임에 따라 세수효과 추정을 위한 근거 미흡

□ 주요 논의 사항

-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통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득세와 법인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사내유보금을 줄이고 배당을 강제하게 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자본축적 저해로 인한 기업성장에 악영향 등 우려 제기

(4) 법인세율 인하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단순화하고 새로이 설정한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인하

- 개정취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경제활력 제고

[표 65] 법인세율 인하 개정안

(단위: %)

과세표준	현행	류성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구자근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2억원	10	9	9	10	8
2억원~	20			18	
5억원~		20	20		
10억원~					
200억원~	22	20	20	20	
3천억원~	25				

□ 최근 개정 연혁

[표 66] 법인세율 개정 연혁

(단위: %)

과표구간	1998	2002	2005	2008	2009	2010	2012	2018
1억원 이하	16	15	13	11	11	10	10	10
1~2억원	28	27	25					
2~200억원				20	20			
200~3,000억원				22	22			
3,000억원 초과							25	
과표구간 개수	2개						3개	4개

[표 67] 법인세율 개정의 세수효과

(단위: 조원)

	류성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구자근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연평균	-10.8	-8.1	-6.7	-5.7
5년간	-54.0	-40.6	-33.6	-28.5

□ 주요 논의 사항

- 2017년 세법개정으로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후 세율인하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법인세율 인하 찬성측 논거
 - ①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촉진→경제성장→세수증가라는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필요
 - ② 현재 법인세의 과표구간이 과다하여 조세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주요국의 추세와 맞지 않으므로 과표구간을 단순화할 필요
 - ③ 최근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므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
 - 법인세율 인하 반대측 논거
 - ① 법인세율이 투자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법인세율 조정이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단언할 수 없음
 - ② 코로나19 극복, 양극화·저출산 등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재정적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 시 세수감소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낮아지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
 - ③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27.5%)은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 법인세율 변경은 소득재분배와 조세형평성, 법인세율이 고용과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율 관련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

(5) 기업상속공제 적용 완화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기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완화
- 개정취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 확보

[표 68] 기업상속공제 완화 개정안

	현행	홍석준 의원안	이영 의원안	김용판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
중견기업 범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매출액 1조원 미만	매출액 1조원 미만	-
피상속인 계속 경영요건	10년	5년	-	5년	5년
피상속인 경영기간별 공제한도액	10~20년:200억원 20~30년:300억원 30년 ~: 500억원	5~20년:200억원 20~30년:300억원 30년 ~: 500억원	10~20년:500억원 20~30년:700억원 30년 ~: 1천억원	5~20년:400억원 20~30년:600억원 30년 ~: 1천억원	5~20년:200억원 20~30년:300억원 30년 ~: 500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50%(상장30%) 10년 이상 보유	30%(상장15%) 5년 이상 보유	-	-	-
상속인 가업종사요건	2년이상 가업종사	1년 이상 가업 또는 동종업 종사	-	-	-
사후관리기간	7년	5년	-	5년	5년
연도별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	80%	-	-	60%	삭제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유지 요건	7년간 상속당시 유지	5년간 상속당시 유지	-	5년간 상속당시 유지	5년간 상속당시 80% 유지

□ 최근 개정 연혁

- 2014년 이전에는 가업요건(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및 공제한도(1억원 → 200~500억원)를 중심으로 확대, 그 이후 사후관리 기간(10년 → 7년) 및 요건 완화(고용유지) 중심으로 개정

[표 69]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요건 연혁

구분	~2007	2008	2009	2011	2013	2014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만 가능			1,500억원 이하	2천억원 이하	3천억원 미만
피상속인의 계속경영기간	5년	15년	10년			

[표 70] 기업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연혁

구분	~2007	2008	2009	2012	2014~
공제율	100%	20%	40%	70%	100%
공제한도	1억원	30억원	60~100억원	100~300억원	200~500억원

[표 71]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연혁

구분	1997	2008	2011	2014	2017	2018	2019	2020	
사후관리기간	5년	10년					7년		
가업용 자산 유지	처분 금지	가업용 자산 10년 내 20%(5년 내 10%) 처분 금지							
가업에 종사	가업에 종사할 의무								
주식지분 유지	-	상속인 지분 유지 의무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경우 예외 인정				
연도별 고용유지 요건			각 사업연도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직전 2년 평균의 80% 유지 의무			각 사업연도말 기준고용 인원(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 고용인원)의 80% 유지 또는 기준총급여액(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총급여액의 평균)의 80% 유지			
전체기간 고용유지 요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100%(중견기업 120%) 유지 의무			7년간 기준고용인원의 100% 유지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100% 유지			
추징액	공제액 전액 추징		기간별 추징률 반영	이자상당액 부과	자산처분 비율고려				

□ 세수효과

◦ 추정 곤란

- 기업상속공제 대상요건을 충족하는 상속분 등에 대한 가용자료 부재

□ 주요 논의 사항

◦ 기업상속공제 완화에 대한 찬반의견

- (찬성측 의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증세율이 높은 반면 기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투자, 고용증대를 위해 기업상속공제 확대 필요

- (반대측 의견) 2019년 세법개정에서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되는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및 사후관리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는 상속세율 인하 수단으로 활용

(6)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 개정취지: 상속인과 수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

[표 72]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개정안

(단위: %)

현 행		권성동 의원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5
1~5억원	20	1~5억원	10
5~10억원	30	5~10억원	20
10~30억원	40	10~30억원	30
30억원 초과	50	30억원 초과	40

□ 최근 개정 연혁

- 1999년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구간을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표 73] 상속세 및 증여세율 연혁

(단위: %)

1996 이전		1997~1999		2000 이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5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0.5~2.5억원	20	1~5억원	20	1~5억원	20
2.5~5.5억원	30	5~10억원	30	5~10억원	30
5.5억원 초과	40	10~50억원	40	10~30억원	4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 세수효과

- (2021년) 없음 (연평균) -3.1조원 (2021~2025년) -15.5조원

□ 주요 논의 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에 대한 찬반의견
 - (찬성측 의견)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GDP 대비 상증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 점, 조세제도의 발달로 소득세 과세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근본적인 논의필요
 - (반대측 의견) 상증세 최고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각종 비과세 공제로 인하여 실질적 부담은 낮은 상황이고 소득세 부담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 소득불평등 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상증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

(7)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확대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일부 미발급 사유를 제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과오납한 경우 세관장이 이를 징수·환급한 후 해당 금액만큼 수정하는 내용의 수입세금계산서
- 개정취지: 납세자의 권리 보호

[표 7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안

	현행	정부안
발급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의 결정·경정 시 미발급 • 단, 다음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로 확인 -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의 결정·경정 시에도 발급 허용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미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포탈죄 등으로 벌칙 적용 - 허위문서 작성 등을 통해 과소신고 - 특수관계 관련 불성실 자료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등

□ 최근 개정 연혁

- 2013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제한
 -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발급

- 2018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수입자의 단순착오 외에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발급사유 확대
- 세수효과
 - 추정근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 대상 수입액 규모에 대한 자료 부재
- 주요 논의 사항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수입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발급요건의 완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강화할 필요
 - 수입자는 수입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며,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 시 수입액을 성실신고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과세자료 불성실 제출 등 일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내산 재화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8)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상향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740원)
 - 개정취지: 담배 유형별 세부담 형평성 제고

[표 75]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상향 개정안

	현행	정부안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니코틴 용액 1㎖당 740원

- 최근 개정 연혁
 - 2015년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2017년 전자담배 세분화
 - 액상형: 1ml당 370원 / 껍련형: 20개피당 529원 / 기타유형 1g당 51원
- 세수효과
 - (2021년) 30억원, (연평균) 33억원, (2021~2025년) 166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정부는 껍련 1갑과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0.8ml가 흡연효과가 동일하다는 결과²³⁾를 전제로 2배 수준의 세율인상안 제출
 - 심사과정에서 적정세율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및 흡연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관련 산업 및 해외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존재

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2019.10.~2020.6.

3 기타 추후 논의 과제

- 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향후 보완책 마련
 - 2023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금융세제 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2020.11.27. 기획재정위원회) 향후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중장기 자원조달 방안 마련
 - 인구고령화 및 복지 확대 정책으로 조세의 세입 확충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정부의 중장기 세입확보를 위한 계획이 구체화될 필요
 - (2020.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정부는 중장기 자원조달 방식과 계층별 세부담 배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부 록
- 확정된 2021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1 2021년 총수입

- 2021년 총수입은 정부안(483.0조원) 대비 3,933억원이 감액된 482.6조원으로 확정, 2020년 추경예산(470.7조원)대비 11.9조원(2.5%)이 증가한 수준
- 국세수입 282.7조원
 -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가가 예상되나, 코로나19로 인한 법인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어 추경예산 대비 3.0조원(1.1%) 증가
 - 세외수입 28.9조원
 - 경상이전수입과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의 감소로 추경예산 대비 0.2조원(-0.8%) 감소
 - 기금수입 171.0조원
 - 가입자수 증가 및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 증가(3.6조원, 5.0%)등으로 추경예산 대비 9.0조원(5.5%) 증가

[표 76] 확정된 2021년 총수입 예산

(단위: 조원, %)

	2019 실적	2020		2021 확정 예산	추경 대비	
		본예산	추경			(%)
총수입	473.1	481.8	470.7	482.6	11.9	2.5
국세수입	293.5	292.0	279.7	282.7	3.0	1.1
세외수입	25.3	27.9	29.1	28.9	-0.2	-0.8
기금수입	154.0	161.9	161.9	171.0	9.0	5.5
- 사회보장기여금	69.6	73.4	73.4	77.0	3.6	5.0

주: 추경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정부안 대비 변동 내용

가. 총수입

- 2021년 총수입은 482조 6,006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82조 9,940억원)에서 3,933억원 감액
 - 국세수입은 282조 7,425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749억원 감액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인하(0.5% → 0.25%), 원료용 증유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신설,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인상 미반영, 연안화물여객선 유류세 감면 확대 등으로 749억원 감액
 - 세외수입은 28조 8,64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3,007억원 증액
 - 재산수입을 3,360억원 증액하고,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10억원)과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38억원) 등을 감액
 - 기금수입은 170조 9,934억원으로 당초 예산안에 비해 6,192억원 감액
 - 5G 이동통신 투자에 비례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조정 등으로 6,000억원 감액

[표 77] 2021년 총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세 목	2020		2021			증감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최종	추경 대비	%
총수입	4,817,710	4,708,267	4,829,940	-3,933	4,826,006	118,761	2.5
국세수입	2,919,969	2,797,123	2,828,174	-749	2,827,425	30,302	1.1
세외수입	278,733	291,115	285,640	3,007	288,647	-2,468	-0.8
기금수입	1,619,007	1,619,007	1,716,126	-6,192	1,709,934	90,927	5.6

주: 추경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국세수입

- 2021년 국세수입은 282조 7,425억원으로 정부안(282조 8,174억원)에 비해 749억원 감액
-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가 감액됨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인하(0.5%→0.25%)로 소득세 15억원과 법인세 119억원 감액
 - 원료용 증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등으로 개별소비세 등 270억원 감액
 -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인상 미반영으로 개별소비세 등 44억원 감액
 - 연안화물여객선 유류세 감면 확대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128억원 감액

[표 78] 2021년 국세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세 목	2020		2021			증감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최종	추경 대비	%
총국세	2,919,969	2,797,123	2,828,174	- 749	2,827,425	30,302	1.1
일반회계	2,841,174	2,718,778	2,740,975	- 749	2,740,226	21,448	0.8
◦ 내국세	2,510,885	2,403,376	2,396,070	- 423	2,395,647	- 7,729	- 0.3
1. 소득세	884,178	884,654	898,175	- 15	898,160	13,506	1.5
2. 법인세	644,190	584,753	533,173	- 119	533,054	- 51,699	- 8.8
3. 상증세	83,073	84,166	90,999		90,999	6,833	8.1
4. 부가가치세	688,710	645,842	666,535	- 4	666,531	20,689	3.2
5. 개별소비세	102,279	94,788	100,940	- 285	100,655	5,867	6.2
6. 증권거래세	43,848	49,350	50,861		50,861	1,511	3.1
7. 인지세	10,523	10,523	9,467		9,467	- 1,056	- 10.0
8. 과년도수입	54,084	49,300	45,920		45,920	- 3,380	- 6.9
◦ 교통세	157,273	154,636	157,015	- 112	156,903	2,267	1.5
◦ 관세	87,912	77,140	83,635	- 163	83,472	6,332	8.2
◦ 교육세	51,894	50,416	53,117	- 51	53,066	2,650	5.3
◦ 종합부동산세	33,210	33,210	51,138		51,138	17,928	54.0
특별회계	78,795	78,348	87,199		87,199	8,851	11.3
◦ 주세	33,275	31,637	32,492		32,492	855	2.7
◦ 농특세	45,520	46,711	54,707		54,707	7,996	17.1

주: 추경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세외수입

- 2021년 세외수입은 28조 8,647억원으로 정부안(28조 5,640억원)에 비해 3,007억원 증액
 -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의 예결산 추이를 반영함에 따라 면허료 및 수수료, 기타재산수입 등을 조정
 - 재산수입을 3,360억원 증액하고, 재화및용역판매수입(-310억원)과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38억원) 등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정부안대비 3,007억원 증액

[표 79] 2021년 세외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세 목	2020		2021			증감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최종	추경 대비	%
세외수입	278,733	291,115	285,640	3,007	288,647	-2,468	-0.8

주: 추경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라. 기금수입

- 2021년 기금수입은 170조 9,934억원으로 정부안(171조 6,126억원)에 비해 6,192억원 감액
 - 국회 심의과정에서 5G 이동통신 투자에 비례한 주파수 재할당 대기를 조정을 반영하여 6,000억원 감액
 - 주파수할당대가 조정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3,300억원과 방송통신발전기금 2,700억원을 감액

[표 80] 2021년 기금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세 목	2020		2021			증감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최종	추경 대비	%
기금수입	1,619,007	1,620,029	1,716,126	6,192	1,709,934	90,927	5.6

주: 추경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발간일 2020년 12월 15일
발행인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tel 02·786·2999)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4744)

ISBN 978-89-6073-380-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